

# 교회헌법과 보칙 2025



# 교회헌법과 보칙

## 2025



Christian  
Reformed  
Church

|                                 |    |
|---------------------------------|----|
| 서문                              | 07 |
| 교회헌법과 보칙                        | 11 |
| 서문                              | 11 |
| 1. 교회헌법의 목적과 기초                 | 11 |
| I. 교회의 직분                       | 11 |
| A. 일반규정                         | 11 |
| 2. 교회의 특별 직분                    | 11 |
| 3. 교회 직분의 자격                    | 11 |
| 4. 특별 직분의 소명                    | 12 |
| 5. 직분자 서약                       | 13 |
| B. 말씀사역자(목사)                    | 22 |
| 6. 말씀사역자 인준 자격                  | 22 |
| 7. 정규 신학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말씀사역자 인준 | 23 |
| 8. 청빙 자격                        | 25 |
| 9. 노회 카운슬러(counselor)의 직무       | 29 |
| 10. 안수와 취임                      | 29 |
| 11. 말씀사역자의 직무                   | 31 |
| 12. 말씀사역자의 특정 임무와 소명            | 31 |
| 13. 말씀사역자에 대한 감독                | 35 |
| 14. 목사직의 해직과 재안수                | 36 |
| 15. 말씀사역자에 대한 지원                | 38 |
| 16. 휴직                          | 39 |
| 17. 교회 사임                       | 40 |
| 18. 은퇴                          | 42 |
| 19. 신학교                         | 44 |
| 20. 신학교수의 임무                    | 44 |
| 21. 신학생 장학기금                    | 44 |
| 22. 신학생의 설교 인허                  | 44 |
| C. 위탁목사                         | 46 |

본 문서는 북미주 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 교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CRC 한인 목회자 협의회가 위임한 ‘교회헌법 한국어 번역 검토 특별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202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번역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translate@crcna.org](mailto:translate@crcna.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23. 직무와 기능              | 46 |
| 24. 위탁목사의 청빙            | 48 |
| D. 장로와 집사               | 51 |
| 25. 장로와 집사의 사역          | 51 |
| II. 교회의 의결기구            | 52 |
| A. 일반규정                 | 52 |
| 26. 의결기구                | 52 |
| 27. 교회 의결기구의 권위         | 52 |
| 28. 의결기구의 적법한 심의 안건     | 52 |
| 29. 의결기구 결정의 성격         | 52 |
| 30. 장소                  | 52 |
| 31. 결정에 대한 변경 요청        | 70 |
| 32. 의결기구의 절차와 질서        | 71 |
| 33. 의결기구 산하 위원회         | 78 |
| 34. 의결기구로 파송            | 79 |
| B. 카운실                  | 79 |
| 35. 카운실의 구성             | 79 |
| 36. 모임 횟수와 상호 직무확인      | 80 |
| 37. 교인총회                | 80 |
| 38. 교회의 유형과 자격          | 80 |
| C. 노회                   | 87 |
| 39. 노회의 구성              | 87 |
| 40. 노회의 회의              | 88 |
| 41. 목회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과 논의 | 89 |
| 42. 노회 카운슬러와 교회방문단      | 90 |
| 43. 노회에 대한 지원과 설교 인허    | 92 |
| 44. 인근 노회와 연합 사역        | 92 |
| D. 총회                   | 92 |
| 45. 총회의 구성              | 92 |
| 46. 총회의 회의              | 93 |
| 47. 총회의 직무              | 93 |
| 48. 총회 대리인              | 95 |
| 49. 교회연합 관계             | 95 |
| 50. 교회연합 단체             | 95 |

|                   |     |
|-------------------|-----|
| III. 교회의 임무와 사역   | 96  |
| A. 예배             | 96  |
| 51. 예배의 요소와 공예배   | 96  |
| 52. 예배에 대한 당회의 규정 | 96  |
| 53. 예배의 실행        | 97  |
| 54. 설교            | 98  |
| 55. 성례의 집례        | 98  |
| 56. 유아세례의 집례      | 98  |
| 57. 성인세례의 집례      | 98  |
| 58. 유효한 세례        | 99  |
| 59. 입교교인의 자격      | 99  |
| 60. 성찬식의 집례       | 100 |
| 61. 공예배에서의 기도     | 100 |
| 62. 헌금            | 100 |
| B. 신앙 교육          | 100 |
| 63. 청소년 신앙 교육     | 100 |
| 64. 성인 신앙 교육      | 101 |
| C. 목양             | 101 |
| 65. 목양적 돌봄의 시행    | 101 |
| 66. 교적의 이전        | 101 |
| 67. 교적의 유지와 소멸    | 101 |
| 68. 교적부           | 102 |
| 69. 결혼식 집례        | 102 |
| 70. 장례식           | 103 |
| 71. 기독교 학교        | 103 |
| 72. 교회 안의 모임들     | 103 |
| D. 교회사역           | 104 |
| 73. 교회사역을 위한 위임   | 104 |
| 74. 지역교회의 사역      | 104 |
| 75. 노회의 사역        | 104 |
| 76. 교단의 사역        | 104 |
| 77. 총회의 사역 운영     | 105 |
| IV. 교회의 훈계와 권징    | 105 |
| A. 일반규정           | 105 |
| 78. 훈계와 권징의 목적    | 105 |
| 79. 교인 상호간의 책임    | 105 |

|                             |     |
|-----------------------------|-----|
| 80. 당회의 권위 -----            | 105 |
| B. 교인에 대한 훈계와 권징 -----      | 106 |
| 81. 출교와 교적의 회복 -----        | 106 |
| C.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권징 -----     | 107 |
| 82. 특별 권징 -----             | 107 |
| 83. 특별 권징의 근거 -----         | 107 |
| 84. 직분의 회복 -----            | 107 |
| 결론 -----                    | 111 |
| 85. 교회 간 그리고 직분 간의 평등 ----- | 111 |
| 86. 교회헌법의 개정 -----          | 111 |
| 부록 -----                    | 112 |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북미주 개혁신교회(CRC)의 중요한 문서인 교회헌법과 보칙입니다. 제목만 보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운영 도구”로 불려도 좋을 만큼 중요한 책자입니다. 이 문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교회와 노회(지역교회들의 모임) 그리고 총회(교단의 연례 모임)에서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이 책자를 통해 북미주 개혁신교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회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헌법은 CRC 교회들이 어떻게 함께 모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한 내용을 담은 교단 문서이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규정과 범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교회헌법은 단순한 규정집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우리 교단의 공동체가 약속한 언약의 기록이다. CRC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독특한 일부로서 질서 있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헌법을 따라 우리 공동의 삶을 세우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언약적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고백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교회가 기능하고, 지도자를 세우며, 함께 모이고, 사안을 논의하며,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서로 책임지는 그 모든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2024년 총회는 교회헌법 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교회헌법의 목적을 교회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2024 총회록, p. 853). 교회헌법과 기타 행정 관련 자료들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욱 깊어지도록, 부단한 기도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과 필요한 경우 이 규정들을 수정할 때도 함께할 것에 동의한다. 교회헌법이 교회들의 문서라는 사실과 해석과 수정에 있어서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헌법은 우리가 함께 작성한 우리의 문서이다. 우리 교단이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교회헌법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 속의 여러 교회를 아우르면서도 공통의 기준을 세워 함께 하나 됨을 추구한다.

문학에 다양한 장르가 있고, 성경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교회헌법도 여러 장르를 포함한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헌법은 잠언과 같은 지혜문서에 비교할 수 있다. 세대에 걸

쳐 모아진 교회의 지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교회헌법의 각 조항의 목적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 헌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와 문화의 변화에 지혜롭게 적응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헌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교회들은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한다. 교회헌법 개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한 교회의 카운실이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시 총회로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더 많은 지도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련 사역자들은 함께 사는 소명을 어떻게 이루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된다.

이처럼 교회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은 교단의 가장 상위 의결기구에서 결정한다. 중요한 개정인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되기 전에 모든 교회에 보내어 그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개정된 조항은 그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정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모든 교회의 목소리를 듣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과 절차는 교회헌법 제1조에서 인용하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한다. 고린도전서 14:40은 당시 무질서한 예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말씀이지만,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약의 원리를 강조한다. 우리 교회헌법은 이러한 원리를 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하여 실행할 것을 추구한다.

교회헌법을 개정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 교회의 신학적 전통의 스승 중 한 사람인 존 칼빈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적 규율과 예식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시대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하나의 동일한 형태를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규칙들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곧 교회의 질서와 품위를 위해 필요로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 규칙들에 비추어 보아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각 나라와 시대의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통적인 관습을 바꾸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우리는 충분한 이유 없이 성급하게, 경솔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 혹은 해로운지를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면, 모든 일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독교 강요, IV.x.30, 박건택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칼빈은 건전하고 평화롭게 운영되기 위해 질서 있는 헌법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교회 안의 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두고, 가능한 한 융통성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가장 중요하게, 칼빈은 교회헌법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원칙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른 문서들과 다른 점

독자들은 본 교단에서 펴낸 교회헌법(Church Order), 교회헌법 보칙(Church Order Supplements), 그리고 별도로 발행한 총회 진행 규칙(Rules for Synodical Procedure)을 구분해야 한다.

교회헌법은 교회의 구성과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들의 모음으로서, 네 가지의 주요 항목, 즉 교회의 직분, 회의, 직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의 훈계와 권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헌법 보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결정 내용으로서, 교회들이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교회헌법과 함께 기록된 것이다.

총회 진행 규칙은 북미주 개혁교회의 연례 총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총회의 구성, 직무와 책임, 그리고 회의의 규칙을 포함한다. 이 문서는 교단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교단의 결정은 매년 출판되는 총회록에 실려 있으며, 웹사이트([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총회의 회의록과 함께, 교단의 신학과 윤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도 그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개혁주의 교회 제도

교회 제도는 교회의 운영과 조직 형태에 관한 것이다. CRC는 장로들이 운영하는 장로회 제도를 따른다. 이것은 감독들의 다스림으로 운영되는 가톨릭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등의 감독제와 구별되며, 각 지역교회의 자율적 운영방식을 가진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리스도 제자회 등의 회중제와도 다르다. 다만 일부 회중제 교단은 지역교회를 넘어 더 큰 연합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CRC 교단은 장로들에 의한 운영 체계를 가지지만, 장로교단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CRC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종신직이 아니라 일정한 임기 동안 봉사한다. 둘째, 목사의 교적(credentials)이 다른 장로교단이나 기타 개혁교단처럼 노회에 있지 않고, 지역교회 카운실에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CRC

에서 교회헌법은 신앙고백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헌법은 신조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지 않으며, 교회헌법은 신조(creeds)와 신앙고백(confessions)에 종속되고, 신조와 신앙고백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 번역과 자료

CRC는 교단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에 교단의 사역지원국에서는 교회 제도 관련 문서들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교회헌법과 보칙은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인쇄본으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3년판 중국어 교회헌법이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개정판이 준비 중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crcna.org/synodresources](http://crcna.org/synodresources)에서 볼 수 있다.

교회헌법의 다양한 번역본과 더불어, CRC는 사역지원국과 소수민족 사역 리더들과 협력하여, 교단의 입장문(Position Statement),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신조, 신앙고백 등 여러 문서의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번역 문서들을 [crcna.org/languages](http://crcna.org/languages)에서 볼 수 있다.

## 교회헌법의 형식

교회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총회는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해 왔다. 다양한 결정들과 개정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2009-2010년에 작업하여 완성한 본 책자는 교회헌법과 보칙을 읽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했다.

교회헌법과 보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매년 혹은 필요에 따라 개정되는 북미주 개혁교회 운영교본(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CRC 웹사이트, [crcna.org/Library](http://crcna.org/Library)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품위 있고 질서있게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한다!

# 교회헌법과 보칙

## 서문

### 제1조

a. 북미주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개혁주의 신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한 것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인정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엡 4:12) 위해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고전 14:40)는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본 교단의 구성과 사역을 아래 조항들로 규정한다.

b. 본 교회헌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은 교회의 직분, 교회의 회의, 교회의 직무와 사역, 그리고 교회의 훈계와 권징이다.

## I. 교회의 직분

### A. 일반규정

### 제2조

교회는 말씀사역자, 장로, 집사, 위탁목사의 직분을 인정한다. 각 직분은 품위와 명예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다만 맡겨진 사명과 직무에 따라 구별된다.

### 제3조

a. 성경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적 신앙고백을 한 모든 성인 입교교인(confessing members)은 목사, 장로, 집사, 위탁목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b. 공식적으로 청빙받아 안수(ordination) 또는 취임(installation)을 받은 자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행할 수 있다.

-보칙 제3조 a항, 제45조, 제48조 a항 참조

## 보칙 제3조 a항

### 규칙

1. a. 모든 교회는 여성이 목사, 장로, 집사, 위탁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b. 노회는 교회 직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경 이해에 따라, 여성 직분자(목사, 장로, 집사, 위탁목사)가 노회에 총대로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c. 합당하게 선출되고 안수를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총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있다. 직분자는 그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2. 총회 대리인(Synodical deputies)은 교회헌법 제6~18조와 82~84조에 규정된 목사직 관련 사안에 대해 그들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3. 모든 노회는 소속 교회들이 자신들의 성경적 신념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고 안수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노회원들은 목사 고시와 교적 관련 절차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여성 목사 후보자에 대한 고시는 여성의 직분을 인정하는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노회에서 진행한다.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인근 노회 소속 교회들에서 대표를 초대하여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4. 북미주 지역 밖에 있는 협력 교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본 교단의 여성 목사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승인되지 않는다.
5. 자격을 갖춘 여성이 제출한 말씀사역자 지원서를 심사할 때,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Candidacy Committee)와 총회는 위원들과 총대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씀사역자 후보자 인준(declaration of candidacy) 시에는 총대들이 투표를 기권할 권리를 가진다.
6. 사무총장은 여성 직분자들(목사, 장로, 집사, 위탁목사)이 노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노회들의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2007 총회록, pp. 610-12)

## 제4조

- a. 직분자를 청빙하고 선출할 때, 카운실은 교회에 선출할 인원 수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카운실이 그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칙 제4조 a항 참조

- b. 카운실은 공천에 앞서, 회중이 직분에 적합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추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c. 직분자 선출은 교인총회에서 카운실의 감독하에 기도로 시작하며, 카운실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성인 입교교인(confessing members)은 투표권이 있다.
- d. 각 직분에 선출된 자들의 이름을 공표한 후, 정당한 사유의 반대가 없을 경우 카운실은 그들을 안수하거나 취임하도록 한다. 안수 또는 취임은 공예배 중에 교단 양식을 사용하여 거행한다.

## 보칙 제4조 a항

### Red Mesa 노회 소속 교회를 위한 수정

직분자 선출 시, 카운실은 선출할 직분의 숫자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숫자를 지명하여 회중에게 추천할 수 있다.

(1983 총회록, p. 660)

### 제비뽑기 선출방식

직분자 선출 시, 회중 투표가 선거 과정의 일부로 포함된다면,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003 총회록, p. 609)

## 제5조

- a. 카운실, 노회, 총회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모든 직분자는 직분자 서약(Covenant for Officebearers)에 서명하여 교회의 교리에 동의함을 표명한다.

-보칙 제5조 a항 참조

- b. 모든 직분자는 CRCNA 사역자 행동강령에 요약된 행동 기준을 준수한다.

-보칙 제5조 b항 참조

## 보칙 제5조 a항

### 직분자 서약

[아래 서명하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 있어 그것에 순종한다.

우리는 세 개의 신조(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를 기독교 신앙의 범교회적 표현으로 고백한다. 이 신조들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시대와 나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세 개의 표준 신앙고백(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트 신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는 역사적 개혁신앙의 표현으로 고백한다. 이 신앙고백들은 우리의 성경 이해를 규정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한다.

이러한 신앙고백들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고 다스림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 교리를 진심으로 믿으며, 설교와 가르침, 집필, 사역, 그리고 삶 전반에서 이에 따라 행함으로써, 그 교리를 충실히 장려하고 수호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신조들과 신앙고백들과 함께, 우리는 또한 현대어 신앙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현 시대에서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개혁신앙의 현대적 표현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더욱 충만하게 이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들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수용할 것을 서약한다. 만일 신앙고백서의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확신할 경우, 교회헌법과 보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의 견해를 교회에 전달할 것이다.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견해를 성실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본 직분자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

(2012 총회록, pp. 761-62)

\* 신학교수, 목사, 위탁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안수 받거나 취임할 때 본 서약에 서명한다.

####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gravamina) 관련 지침 및 규정

총회는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confessional-difficulty gravamen): 직분자가 안수를 받은 후, 교단 신앙고백에 담긴 특정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이의를 느끼고 이를 표현하지만, 해당 교리에 대해 확정적인 반대 신념을 가지지 않으며, 신앙고백의 수정이나 개정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신앙고백의 수정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confessional-revision gravamen): 직분자가 교단의 신앙고백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정이나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경우.

#### A. 직분자 서약을 통해 신앙고백에 동의를 표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지침:

1. 직분자 서약 서명자는 어떠한 유보없이 교단이 인정하는 신앙고백과 신조에 포함된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로 동의한다.
2. “어떠한 유보없이”란 직분자가 자기가 아는 한,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담긴 어떠한 교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각한 의심이나 확고한 반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선언한 내용도 포함된다.
3. “어떠한 유보없이”라는 표현은 서명자가 개혁주의 신앙고백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서명자가 어떤 교리에도 감정적으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어떤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4. 직분자 서약에 서명하는 것은 우리 표준 신앙고백의 교리들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표준 신앙고백들이 성경이 그 주제들에 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그 신앙고백들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거나, 모든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거부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5. 직분자 서약 서명자는 공식 기록된 교리의 내용에 서명하며, 그 교리의 부수적인 내용, 즉 그것에 관한 참고사항, 암시, 논평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 그 고백으로부터 신학적으로 추론한다는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표준 신앙고백에 고백된 교리인지 아닌지를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교회의 결정을 구하며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 B.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으로 이의 제기를 할 때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규정:

1. 직분자는 자신의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카운실에 제기하여, 카운실의 권면과 검토, 판단을 받는다. 카운실은 이를 접수한 후, 해당 직분자가 신앙고백에 온전히 일치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 분별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카운실은 직분자와 함께 사랑과 겸손으로 교제하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권면, 그리고 격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이 절차 가운데, 카운실은 다음을 실행한다:
  - a) 해당 직분자가 신앙고백에 대해 가진 어려움과 신념의 성격과 정도를 검토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단순한 신앙상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신앙고백에 반대되는 확고한 신념으로서 신앙고백의 수정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분별한다.
  - b)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 실행 방안에는 해당 직분자에 대한 권면과 교육을 포함하며,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c)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한다. 총 기간은 카운실이 이의 제기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이 절차 가운데, 해당 직분자는 다음을 실행한다:

a) 해당 직분자는 다른 이를 가르치거나, 제자훈련하거나, 돌보거나, 권면할 때 교단의 신앙고백 또는 총회가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선언한 내용에 반대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b) 해당 직분자는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상위 의결기구에 대표로 위임받는 일을 스스로 사양해야 한다.

c) 교단의 신앙고백에 온전히 일치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노력한다.

4.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는 다음의 경우에 해결된다:

a) 해당 직분자가 신앙고백과 신조를 유보없이 긍정할 때, 또는

b) 신앙고백의 수정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를 할 때, 또는

c) 직분을 사임할 때

주: 해당되는 경우, 말씀사역자와 위탁목사는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 과정을 마무리한 후 명예 해직(honorably released)될 수 있다.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직분에서 사퇴한 경우, 이를 해결한 후에야 재안수 받을 수 있다.

5. 교육하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카운실이나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제기한 직분자는 노회의 교회방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운실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회방문단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6. 카운실에 제기된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토와 판단을 받도록 한다. 노회가 검토한 후에도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회헌법 제28조 b항의 원칙에 따라 총회에 제출한다.

7. 모든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는 은혜와 진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어려움은 신앙고백서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명확한 이해를 구하는 개인적인 요청이므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상의 어려움을 표하는 이의 제기는 신앙고백 자체나 교단의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 어떤 내용에도 반대되는 확정된 신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것을 신앙고백에 대한 해당 직분자의 유보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종류의 이의 제기를 목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은 일치를 강요하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직분자에게 합당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앙고백서에 대한 교육과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4 총회록, p. 876-88)

(2025 총회에서 개정, pp. 671-72)

C. 신앙고백의 수정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

1. 교회가 직분자 서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때의 기본 전제는,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의 정당성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의 책임이 서명자에게 있다.

2. 목사(선교사, 신학교수 등 지역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는 목사 포함), 장로, 또는 집사는 신앙고백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카운실에 제출하여 검토와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카운실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경우, 그 사안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토와 판단을 받도록 한다. 만약 노회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헌법 제28조 b항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카운실과 노회가 해당 이의 제기를 자신들의 입장으로 채택할 경우, 그 사안은 상위 의결기구로 제출할 제안서가 되며, 이에 따라 전 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4. 노회가 이의 제기를 부결할 경우, 해당 사안은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 성원을 이룬 총회가 그 사안을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경우, 직분자 서약에 서명한 모든 직분자는 총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온 교회와 함께 그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5. 직분자 서약에 서명한 자들은 카운실의 결정에 대해 노회로, 노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로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한, 상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직분자를 정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

6. 총회는 교단의 모든 교인들이 개정을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갖기 전에 신앙고백 개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2012 총회록, pp. 762-65)

## 보칙 제5조 b항

### 사역자 행동강령

#### 서문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설정할 때, 교회와 사역자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행동강령은 암묵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사후 대응책이 아니라, 교회

가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리 교육하는 예방 지침이다.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행동강령은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모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전하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된다.

교회 안에서 품격과 존중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나 비행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다. 교회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문제 제기를 받은 자의 유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위반 혐의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카운실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가장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사역자들은 교인들에게 상당한 권위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교인들은 사역자들에게 큰 신뢰를 가지며, 출생, 죽음, 질병, 두려움, 의심, 기쁨, 고통 등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들을 초청하고 의지하게 된다. 교인들의 신앙 여정에 동행하며 돕는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어 주는 것은 소중한 특권이다. 이 특권은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평안을 이루도록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역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삶으로 드러내며, 선한 성품과 진실함의 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사역자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스트레스, 불안, 탈진, 실망 등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보다 옛 자아를 따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사역자는 주어진 권위를 목양적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교회의 건강과 복음 증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가 맡겨진 권위와 영향력을 책임 있게 사용하여 그들이 섬기는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임 구조와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동강령의 시행 책임은 해당 사역자의 교적(credential)을 보유한 카운실에 있다. 노회는 노회 지도자들과 직원들의 행동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CRC 교단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은 교단 인사부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행동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조직은 그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위반의 중대성과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노회의 안전한교회(Safe Church) 사역 담당자, Thrive 교회사역부 직원, 그리고 존엄성 위원회(Dignity Team)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은 성경이다. 신앙고백은 성경의 충실하고 참된 해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해석한 문서이며, 우리는 그 신앙고백으로 교단 안에서 하나가 된다. 행동강령은 성경적인 삶의 기준과 실천을 현실 속에 제시함으로써, 적합한 대인관계, 비밀유지, 재정적 청렴성, 목회적 지도력, 그리고 요구되는 보고 체계 등을 다룬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기독교적 기준의 요약이다. 행동강령은 사역

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사역을 위해 요구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지 알려 준다

## 전문

마가복음 10:35-45은 권력의 사용에 대해 두 가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제자들은 권력을 갈망하는 세상적인 영향력 앞에 취약한 상태였다. 예수께서는 세상적 권력이 그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을 “지배한다”고 밝히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43절)고 명하셨다. 권력과 영향력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의 남용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역자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고 질타하셨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겸손한 종으로 일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역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45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이 구절과 다른 구절(빌 2:1-10)에서 부르심의 합당한 모습을 본다.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즉 세상이 행사하는 권력 사용에 맞서고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와 함께 있다(갈 2: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권력을 사용하신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권력을 오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한다. 우리 안에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성적, 그리고 영적인 추악한 학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가진 지위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인을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유희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추악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복된 소망을 가지고 다음의 행동강령이 제시되었다. 이 행동강령은 성경과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현대어 신앙고백에 의해 만들어졌다(벨직 신앙고백서 28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Q&A 55, 107, 111 참조). 이 내용은 2018년 총회에서 주목을 받은 학대 유형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며, 그러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다.

## 행동강령

“사역자(ministry leaders)”는 모든 직분자(안수 받은 목사, 위탁목사, 장로, 집사), CRC 교단 직원 및 대의회 위원회를 포함한다. 또한 지역교회의 카운실은 안수 여부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사역자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역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선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권위를 위임 받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권위, 영향력을 오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도록 부름받았다.

권력 남용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권력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회 내 사역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학대는 영적 학대로 간주되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피해를 초래한다.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오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력 남용 문제 해결 위원회 보고서(2019 총회록, pp. 587-61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관계

1. 저는 개인적, 직업적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섬김을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벧전 5장, 막 10장, 빌 2장, 딤후 4:2).
2. 저는 모든 지위, 신분, 인종, 민족, 성별, 나이 또는 능력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3. 저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적, 육체적, 성적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4. 저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감정적 또는 성적 표현, 몸짓,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

1. 저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 받고, 어떤 형태의 학대나 따돌림 혹은 희롱도 용인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따뜻하고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저는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해 드러났거나 의심되는 사례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3. 저는 피해자가 정의를 구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목회적 리더십

1. 저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진실성·투명성·정직성을 추구하겠습니다.

2. 저는 주어진 능력과 권위, 지위를 사용하여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3. 저는 제가 훈련 받은 역량 안에서 섬길 것이며, 특히 상담에 있어서 제 역량을 넘어설 경우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겠습니다.
4. 저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징계하여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의 평안과 번영을 촉진하겠습니다(딤후 3:16).
5. 저는 목회와 상담에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6. 저는 인지되었거나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고하겠습니다.

#### 비밀유지

1. 저는 비밀을 적절하게 침묵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즉 어떤 정보가 되었든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저는 비밀리에 나눈 정보를 악용하여 저의 지위를 높이거나 타인의 지위를 격하시키지 않겠습니다.

#### 재정

1. 저는 제가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모든 재정이 그 본래의 사역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선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재정 관련 일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며, 적절한 책임 아래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3. 저는 승인된 회계 관행을 준수하며, 사역 자금의 정기적인 검토 또는 감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장려하겠습니다.

제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성경과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지”(미가 6:8) 못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깨어진 신뢰를 인정하고, 정의와 공휴, 진리와 은혜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게 맡겨진 모든 권한이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본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기관의 통찰과 책무에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소망을 두며, 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제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 제 지위와 능력, 그리고 권위를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24 총회록, p. 904)

## B. 말씀사역자(목사)

### 제6조

- a. 말씀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b. CRC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에서 말씀사역자 후보로 인준된 자는 목사로 청빙받을 자격을 가진다.
- c. 다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는 총회 규정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하고, 총회에서 말씀사역자 후보로 인준되지 않는 한 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보칙 제6조 참조

### 보칙 제6조

A. 칼빈신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은 CRC 교단 소속 교회의 청빙 자격을 얻기 위해, 편목과정(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EPMC)을 이수해야 한다.

(1924 총회록, p. 38)

B. 신학생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인터뷰를 거친 후, 총회에서 말씀사역자 후보로 인준된다. 칼빈신학교 교수진은 해당 학생의 학문적 자격, 교리적 건전성, 영적 성숙도와 인격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추천을 영입인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961 총회록, p. 55)

(2004 총회에서 개정, pp. 619-20)

C. 정기 총회기간이 아닌 때의 말씀사역자 후보 인준 규정

1. 말씀사역자 후보 인준이 이루어질 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신학교 학업이 4 과목(units)이하로 남아 있는 학생은 후보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과목(units)”은 각 교과목과 인턴십을 포함한다.
2. 총회는 이러한 학생에 대해, 남은 모든 학업 요건의 이수를 조건으로 목사 후보로 인준할 수 있다.
3. 해당 학생이 남은 모든 학업 요건을 마치면,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그가 청빙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표한다.
4. 해당 학생이 3월 1일까지 남은 학업 요건을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다시 목사 후보 인준 신청을 해야 한다.

5. 목사 후보자가 교단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거나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후보자로 남고 싶으면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1975 총회록, p. 111)

(2004 총회에서 개정, pp. 619-20)

(보칙 제10조 참조)

D. 총회는 말씀사역자 후보자 인준을 위한 투표를 할 때, 모든 후보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투표한다.

(2006 총회록, p. 639)

### 제7조

- a. 규정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건, 겸손, 영적 분별,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타고난 은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는 예외적으로 말씀사역자로 인준될 수 있다.
- b. 이 조항에 따라 안수받는 목사 후보자는 조정된 목사 후보자 교육과정 (MEPMC, Modified 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을 이수해야 한다.

-보칙 제7조 참조

### 보칙 제7조

A. 제7조에 의거하여 청빙 받는 방법

1. 제7조에 따라 말씀사역자로 인준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웹사이트 [www.crcna.org/candidacy](http://www.crcna.org/candidacy)에 있는 “제7조에 따라 임직받는 과정(The Journey to Ministry: Article 7)”의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해당 노회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긍정적인 권고를 받은 후, 총회 대리인의 입회 하에 그 후보자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에 따라 말씀사역자 안수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해당 조항의 높은 기준의 충족은 물론, 특정 교회가 그를 말씀사역자로 청빙하고자 하는 의지와 헌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노회는 제7조에 따른 후보자 고시에 다음의 주제를 포함한다:
  - a. 신약과 구약 주해
  - b. 성경 역사
  - c. 교리신학

d. 일반 교회사, 미국 교회사

3. 신청자가 고시에 합격하면 청빙 후보자로 발표된다.

4. 후보자가 청빙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경우, 청빙교회의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입회 하에 안수 전 고시를 시행한다. 이 고시는 현행 규정을 따르되, 원어시험은 제외한다.

(1920 총회 안건집, pp.26-27;

1922 총회록, pp. 72-73)

(1996 총회에서 개정, p. 581)

#### B. 제7조에 따른 말씀사역자 인준에 관한 공표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안수 신청자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제7조에 언급된 “은사”는 신청자가 매우 예외적으로 탁월한 정도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자질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2. 후보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자질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영적인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타고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이 조항은 평신도 사역자가 원함으로 안수하여 그의 신분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들은 목사가 되는 정규 경로가 철저한 신학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947 총회록에서 채택, p. 94)

#### C. Red Mesa 노회를 위한 특별 권고

1. 원주민 사역자의 안수는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 a. 복음사역에 소명을 받은 유능한 사람들은 정규 신학 수업을 받도록 권유한다.
- b.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헌법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도록 권면받아야 하며, 그 의사를 자신의 카운실, 노회, 그리고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안수를 받을 때,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a. 카운실과 노회 영입위원회(Classis Ministerial Leadership Team)는 제7조에 규정된 특별한 은사에 관한 보증서(credential)를 서면으로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Candidacy Committee)에 발송한다.

b.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카운실과 노회 영입위원회의 추천서와 함께 안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 제7조에 따라 안수 자격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c. 일차적 판단이 긍정적인 경우,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설교 인허증을 부여하여 해당 노회의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한다.

d. 2006년 총회 결정에 따른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모든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e. 안수를 위한 시험을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되, 성경언어 시험을 제외한다.

(1958 총회록에서 채택, pp. 87-8)

(2006 총회록, p. 663)

### 제8조

a. CRC 목사는 관련된 규정을 준수함으로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b. 미국개혁교회(RCA) 소속 목사는 관련된 규정을 준수함으로 본 교단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다.

c. CRC 외의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고자 하면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d. CRC 외의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청빙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표되지 않으면, 총회의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청빙 받을 수 없다.

-보칙 제8조 참조

#### 보칙 제8조

##### A. 현재 교회에서 2년 미만 시무한 목사의 추천

총회는 공식 교회의 카운실이 목회자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교회에서 2년 미만 시무한 목사의 이름을 추천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만일 노회의 카운슬러가 현재 교회에서 2년 미만 시무한 목사를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그 타당성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1916 총회록, p. 29)

##### B. 동일한 목사의 1년 이내 재청빙

노회의 권고 없이 동일한 목사를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식 직무에 두 번 청빙할 수 없다.

(1906 총회록, p. 16)

### C. 특정 기간 시무를 위한 목사 청빙

1. 청빙서가 특정 기간의 시무를 정한다면, 정해진 임기가 마쳤을 때 재임직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 정해진 임기가 마친 후 재임되지 않을 때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해당 교회의 카운슬러는 노회를 대표하여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 종료 절차와 지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가 마쳤을 때 해당 목사는 2년 동안 청빙 받을 자격을 가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목사의 해직을 공표한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빙받을 자격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987 총회록, p. 575)

4. 목사의 특정 임기를 연장할 때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사역 기간을 포함한다.

(2000 총회록, p. 712)

### D. 미국개혁신교회(RCA) 소속 목사의 청빙

1. 본 교단 교회는 목회자 교환협정(2005 총회록, p. 741 참조)에 명시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미국개혁신교회(RCA) 소속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활력있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교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목회자 교환은 타 교단의 안수받은 목사가 자신의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 청빙한 교회에서 무기한 또는 장기간의 임기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3. CRC에서 안수받고 교단 내에서 신앙과 사역 상태가 양호한 목사는 RCA 교회로부터 연장 사역(청빙)을 받을 수 있으며, RCA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동일하게 양호한 신분을 유지하는 목사는 CRC 교회로부터 연장 사역(청빙)을 받을 수 있다.
4. 연장 사역(extended service)이란 CRC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CRC의 목사의 교적을 유지한 채 RCA 교회의 목사로 청빙되어 연장된 기간 동안 목회함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하게 RCA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RCA의 목사의 교적을 유지하면서 CRC 교회의 목사로 연장된 기간 동안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목사는 청빙한 교회의 방침에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한다.
5. 목회자 교환협정은 안수 받은 목사가 교회연합의 정신으로 타 교단에서 목회할 의사를 합당한 절차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목회자 교환협정은 언제나 청빙하는 교회의 청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교회의 방침에 따른다.
6. 안수받은 목사가 타 교단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청빙교회의 적절한 의결기구

에 그 교회의 신학, 예전, 역사, 헌법, 그리고 목회 권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CRC에서 사역하는 RCA 직분자들은 카운실과 노회, 총회가 규정한 상황에 따라 직분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7. 연장 사역은 파송기관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승인된다. (CRC에서 파송기관은 청빙 교회의 카운실이며, RCA에서 파송기관은 해당 목사의 교적을 보유한 노회이다.) 이 경우 목사는 목사직 유지를 위해 파송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청빙이 종료될 경우, 청빙교회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되, 파송기관과 협의하고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2014 총회록, pp. 564-65)

(2025 총회록, p. 685)

8. 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책임은 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 사실을 CRC와 RCA 양 교단의 파송기관(교회 혹은 노회)과 청빙교회에 알린다. 이후 두 교단의 해당 기관들이 함께 그 목회적 돌봄을 담당한다.
9. 목사는 권징에 관한 한 파송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청빙기관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회중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파송기관(교회 혹은 노회)과 청빙교회는 상호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10. 각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는 교단(청빙교회)의 적절한 의결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8조 g항 및 보칙 참조)
11. 안수받은 모든 목사는 교적을 두고 있는 교단의 연금과 복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청빙교회는 연금과 복지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가진다. (제38조 g항 및 보칙 참조)

(2005 총회록, pp. 741-42)

12. 충실하고 적법한 목회자 교환을 실행하기 위해, 한 목회자가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교단 전통에서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 실제로 사역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전통에 바로 서서 목회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전통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그러므로 타 교단에서의 사역은 첫 번째 청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011 총회록, p. 824)

참고: 현재 이 규정은 RCA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CRC에서 유효한 규정이다.

### E. 타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1. 교회가 현실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CRC와 RCA에서 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CRC 외부의 타 교단 목사 청빙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속적으로 활력있는 교회에 한해서 적용된다.

(2005 총회록, p. 742)

2. 타 교단 목사는 CRC 소속 교회에서 청빙받으려면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서 정한 교단 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3. 교회의 카운실은 노회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 교단의 목사를 청빙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주제는 교회헌법 보칙 제8조 E항 4목에서 제시한 “필요성”과 현행 제8조 교단 가입절차 문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다. 목사와 노회,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모두가 해당 청빙안에 동의할 경우, 제8조 교단 가입절차 문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교단 가입 및 청빙 절차를 진행한다.
4. 가입절차를 마친 후, 노회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두 시험(colloquium doctum)을 실시하여 신청자의 교리의 건전성, 삶의 경건성, 개혁교회 사역 및 전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정도를 심사한다. 해당 시험에 총회 대리인이 참석해야 하며, 합격 판정은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결정된다.
5. 합격한 후보자는 경우에 따라 청빙을 받거나 청빙 자격이 있다(Eligible for Call)고 선언될 수 있다. 추가적인 심사나 구두 시험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1984 총회에서 채택, pp. 642-43;

2019 총회에서 채택, p. 783)

#### F. 필요성의 결정

1. 총회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가 타 교단 목사 청빙에 관해 카운실과 노회에 자문을 제공할 때, 그리고 타 교단 목사가 그들이 CRC에서 청빙 자격을 받고자 요청할 때, “필요성” 요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지시한다.
2. 총회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교단 가입절차(III, C, 1)가 규정한 “필요성” 항목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2019 총회록, p. 783)

#### G. 본 교단과 교류 관계에 있는 교단(Churches in Communion) 소속 목사의 겸임 사역

북미주 개혁교회(CRC)와 교류하는 교단의 목사는, 예외적으로 자기 교단의 사역을 병행하면서 본 교단의 사역을 위해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빙은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해당 목사가 본 교단에서 사역해야 하는 필요가 입증되어

야 하며, 연금 관련 조치는 그 목사의 소속 교단 방침에 부합해야 한다.

CRC와 교류하는 교단의 목사는 CRC에서 사역하는 동안 노회에 대의원으로 파견될 권리와 노회 위원회 사역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대표권과 참여권은 해당 노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CRC 목사가 교류 교단의 교회와 CRC 교회에서 겸임 사역을 할 경우, CRC는 예외적으로 교류 교단 교회로부터의 청빙을 허용할 수 있다.

(1997 총회록, p. 663)

(2022 총회록, p. 937)

#### 제9조

목사를 추천하거나 청빙할 때, 카운실은 노회를 대표해 교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노회 카운슬러(counsel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운실과 노회 카운슬러는 청빙서에 서명하며, 노회 카운슬러는 그 과정을 노회에 보고한다.

#### 제10조

- a. 말씀사역자(목사) 후보의 안수는 청빙교회의 노회와 총회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참석 하에 총회 규정에 따라 해당 후보의 교리와 삶을 심사한다. 안수식은 집례하는 목사의 안수기도와 함께 시행한다.
- b. 목사의 취임은 청빙교회의 노회나 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사는 그 전에 이전 카운실과 노회가 발급한 교리와 삶에 관한 추천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칙 제10조 참조

#### 보칙 제10조

##### 목사 후보자 관련 절차 규정

1. 목사 후보자에게 보내는 청빙서에는 노회 고시에 통과할 때까지 청빙이 잠정적임을 명시해야 한다.
2. 안수일자는 후보자가 고시를 통과한 후에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노회가 지정한 성경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하며, 이는 노회 대표들이 참석한 공식 예배 시간, 가능하면 노회 회의를 앞둔 주일에 청빙교회에서 시행한다.
4. 노회는 후보자의 설교문 사본을 총회 대리인과 노회 대의원들에게 제출한다.

5. 노회가 지정한 본문의 설교 외에, 후보자는 두 개의 다른 설교문을 노회 설교 심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두 설교는 신학생 시절에 본인이 실제로 전한 설교로, 하나는 성경본문을, 다른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한 주일 본문을 다루어야 한다. 성경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설교들은 신학교에서 설교 실습이나 수업 중 평가받은 설교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75 총회록, p. 90)

6. 총회는 노회에 자격 증명(credential)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총회가 발표한 목사 후보 선언(candidacy declaration)은 해당 후보자가 안수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노회는 목사 고시에 있어 이와 관련한 추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1978 총회록, p. 24)

(2009 총회에서 개정, p. 583)

7. 노회는 공식 시험관으로 네 명의 노회 대의원을 임명한다. 이 중 두 명은 설교 심사자로서 전체 설교가 행해지는 예배에 참관해야 하며, 다른 두 명은 노회 회의에서 실제 고시를 주관한다.

8. 총회는 노회의 목사 고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채택한다:

a. 소개: 노회의 시험관은 후보자를 노회에 소개한다.

b. 고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포함한다:

1) 실천신학(시간제약 없음)

a) 노회 시험관은 후보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역에 관한 헌신, 현 시대에 사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을 질문한다.

b) 총회 대리인들과 노회 대의원들이 추가로 질문할 기회를 가진다.

c) 다음 주제로 진행하기 전에 진행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한다.

2) 설교 평가

a) 후보자가 입회한 가운데, 제출된 설교문을 심사하고, 예배 인도 시 후보자의 태도에도 유념한다.

b) 설교와 전달 방법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c) 다음 심사 항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성경 및 신학적 입장(후보자 1인당 최소 30분)

a) 시험관은 후보자의 성경적·신학적 판단력과 역량, 건전성을 심사한다.

b) 추가 질문의 기회가 제공된다(시간제약 없음).

c. 목사 인준 절차:

1) 인준 동의안은 내부 회의에서 예비 심의를 거친다.

2)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3) 총회 대리인은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권고안을 준비한다.

4) 노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5) 총회 대리인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결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힌다.

6) 총회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와 총회 대리인은 일치된 결정을 얻기 위해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7)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적으로 총회로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받는다.

(1972 총회록, pp. 44-46)

## 제11조

말씀사역자의 소명은 성경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도를 모으고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 제12조

a.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말씀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주관하고,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도록 교육한다. 또한 다른 직분자들과 더불어, 목회자는 교회와 동료 직분자를 감독하고, 권면과 징계를 시행하며, 모든 것이 품위있고 질서대로 행해지도록 살피고, 성도들을 목양하며, 복음전도와 구제 사역에 참여하고 이를 증진시킨다.

b. (1) CRC가 승인한 선교, 채플린 사역, 또는 전환기 전문 목사직을 수락한 말씀사역자, 또는 (2) 총회가 직접 임명했거나, (3) 총회가 인준한 임명을 수락한 말씀사역자는 지역교회의 정규 절차에 따라 청빙받는다. 이 지역교회는 노회나 총회의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목사가 청빙교회에 적절한 책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보칙 제12조 참조

C. 말씀사역자는 또한 목사의 소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직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러한 목사는 지역교회에 의해 정규적인 방식으로 청빙되지만, 이에 앞서 청빙교회는 노회에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그 사역이 말씀사역자의 소명과 일치하며, 청빙교회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직무가 CRC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목사의 헌신과 충돌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노회에서 확인된 후,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보칙 제12조 참조

d. 말씀사역자는 CRC 외의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될(be loaned) 수 있다. 단, 그 직무가 CRC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목사의 헌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사는 또한 지역교회에 의해 정규적인 방식으로 청빙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포함한 총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보칙 제12조 참조

## 보칙 제12조

### 교회헌법 제12조를 특정한 직무와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

A. “정규적인 방식으로 청빙”된다는 것은, 말씀사역자가 교회 사역이든 교회 외의 사역이든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교회헌법 제4, 9, 10조 참조). 이는 기타 총회 규정이나 노회의 승인을 이행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1. 카운실의 추천과 교회의 선출
2. 카운실의 청빙 연장
3. 노회를 대표하는 카운슬러의 승인
4. 공예배에서 안수 또는 취임

타 교단 교회에 파견되어 목회하는 목사의 경우, CRC의 공예배에서 별도의 취임식을 진행해야 하는 요건은 선택사항이다.

“말씀사역자의 소명과 일치하는” 교회 외의 사역이란, 목사가 CRC 지역교회 밖에서 교회의 권위 아래, 그리고 교회의 공적 대표로서 성경을 선포하고 해석하며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세워지도록 섬기는 직무를 말한다.

B.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

## 1. 사역 직책의 종류

a. 교회헌법 제12조 a항에 의해 규정되는 직책.

여기에는 단독 목사나 부목사에 관계없이 교회 목회자를 포함하며, 또한 여러 CRC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와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의 직책도 포함한다.

b. 교회헌법 제12조 b항에 의해 규정되는 직책.

여기에는 총회가 인가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직책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CRC 교단에서 인준 또는 공인받은 채플린, 선교사, 전환기 전문 목사 직책이 해당된다. 또한 총회 자체의 승인이나 재가를 필요로 하는 직책, 예를 들면 신학교수나 기타 CRC 고위 행정직 등의 직책도 포함된다. 노회는 해당 직책이 말씀사역자의 사역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노회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c. 교회헌법 제8조 b항과 그 보칙에 의해 규정되는 청빙.

여기에는 CRC와 RCA 간 목회자 교환협정에 참여하는 목사를 포함한다. 노회는 파송교회의 동의가 있었음을 노회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보칙 제8조 D항 7 참조).

2. 교회 외의 사역을 위한 말씀사역자를 청빙함에 앞서, 청빙교회는 해당 목사가 CRC 안팎의 인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인준을 받았으며, 모든 총회 규정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목사와 청빙교회, 그리고 임명기관은 공동감독 협의서(A Covenant of Joint Supervision)에 상호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보칙 제8조 D항: 제13조 b항 참조).

C. 노회의 구체적인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책

1. 다른 모든 교회 외의 직책의 경우, 청빙교회는 각 새로운 사역 직책에 대해 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빙교회는 아래의 정보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a. 청빙교회가 관련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설명서(목적, 책임, 자격 등).
- b. 해당 직책이 말씀사역자의 소명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 c. 해당 목사, 청빙교회, 그리고 임명기관이 동의하고 서명한 공동감독 협의서(보칙 제13조 b항 참조).
- d. 노회가 “영적 성격을 지니며 목회 소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책”이라고 선언한 직책이 공석이 될 경우, 새로운 청빙을 진행하기 전에 노회와 총회 대리인은 교회헌법 제11-14조에 근거하여 그 직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e. 즉각적인 청빙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역의 경우, 청빙교회(및 해당 교단기관)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포함한 노회의 추후 승인을 조건으로, 노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잠정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빙이 진행될 경우, 청빙서에 해당 청빙이 잠정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만일 노회에서 그 잠정 승인을 확정하지 않고, 해당 목사가 그 사역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그는 목사직에서 해직(released)될 수 있으며, 교회헌법 규정(제14조 e항 참조)에 따라 다시 복직될 수 있다.

2. 타 교단 교회로부터 사역 요청을 받은 목사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CRC의 목사직을 유지한 채 해당 교회에 일시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a. CRC 목사의 사역을 요청하는 교회는 개혁신앙적 증언(Reformed witness)의 가치를 이해하고, CRC 교단의 신앙고백서와 조화를 이루는 신앙문서에 따라 해당 목사가 CRC의 신앙과 실천에 일치하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허락한다.

b.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노회와 총회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c. 이러한 규정은 교적을 CRC에 둔 목사가 CRC 외의 교회로부터 양쪽 교회를 동시에 섬기는 겸임 사역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d. 만일 RCA 교회가 요청했을 경우, 청빙은 목회자 교류협정에 따라 진행된다(보칙 제8조 D항 참조).

D. 모든 경우에 목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빙되어야 하며, 카운실과 노회 카운슬러는 모든 관련 과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회는 카운슬러의 업무를 교회헌법 제42조 c항에 따라 노회록에 기록한다.

E. 가능한 경우,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 기관, 또는 단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교회에 청빙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사의 교적은 통상적으로 청빙교회에 둔다. 해당 사역지가 청빙교회의 노회 구역 밖에 위치할 경우, 청빙교회의 노회의 승인 외에 그 사역지의 노회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F. CRC 연금 플랜을 유지하려면, 교회 외의 사역을 하는 목사 본인이나 그가 섬기는 교회, 기관, 교단 산하기관이 목회자 연금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금액을 목회자 연금 기금(minister's pension fund)에 납부해야 한다.

G. 교회 외의 사역 목사의 감독은 해당 목사나 청빙교회의 요청에 따라 다른 교회로 이적될 수 있다. 목사의 교적 이동은 지역교회의 정규 청빙 절차를 따르고 해당 카운실들과 노회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교회 외의 사역 직책이 폐지될 경우, 해당 목사는 상황에 맞는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직된다.

## 제13조

a. 교회를 섬기는 말씀사역자(목사)는 청빙교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그의 교리와 삶, 직무에 대해 청빙교회의 감독을 받는다.

b. 청빙교회 이외의 교회, 기관, 또는 교단 산하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해당 교회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빙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청빙교회의 카운실은 해당 목사의 교리와 삶에 대한 1차적 감독 책임을 지며, 사역하는 교회, 기관, 또는 교단 산하기관은 그 직무에 대한 1차적 감독 책임을 가진다.

-보칙 제13조 b항 참조

### 보칙 제13조 b항

A. 말씀사역자가 청빙교회 외의 교회나 기관에 직책이 있을 경우, 그 직책은 해당 목사와 청빙교회 및 임명 기관이 승인하고 노회가 동의한 공동감독 협약에 따라 규정된다. 공동감독 협약의 지위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관련자에게 전달하여 검토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

B. 교회 외의 사역에서 CRC 목사의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

1. 말씀사역자를 공동으로 감독하는 CRC의 카운실, 기관, 또는 교단 산하기관 중 어느 하나가 해당 말씀사역자의 교리, 삶, 또는 직무에서 중대한 일탈이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경우, 그의 신분이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공동감독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공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타 교단 교회나 교회 외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그가 사역하고 있는 감독기관은 해당 목사의 사역을 일시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직무의 정지(suspension from office)이나 파면(deposition)은 오직 CRC 청빙교회의 카운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목사의 직무설명서에 변경이 있거나, 사역의 축소 또는 직위 폐지로 인해 신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공식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모든 경우의 징계나 사역 직책에 관련하여 목사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목사는 그 직책에서 공식적으로 해직(release)되거나, 교회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청빙을 받아야 한다.

C. 노회의 교회방문단(church visitors)은 해당 목사에 대한 청빙교회의 감독 상황과, 해당 목사의 청빙교회에 대한 보고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교회방문단은 감독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D. 교회 외의 직책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사는 자신이 서명한 직분자 서약과 행동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CRC의 신앙과 실천을 준수한다.

## 제14조

- a. 말씀사역자(목사)는 청빙한 카운실의 동의없이 다른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회지를 떠날 수 없다.
- b. CRC 말씀사역자가 타 교단에서 사역하기 위해 본 교단 사역을 사임하고자 할 경우, 노회는 사임하는 목사의 신분에 대해 규정한 절차를 따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그를 목사직에서 해직(release)해야 한다.

-보칙 제14조 b항 참조

- c. 말씀사역자는 합당하게 청빙 된 이후에 그 직책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역 직종으로 전직하기 위해 목사직에서 해직될 수 있다.

-보칙 제14조 c항 참조

- d. 해당 말씀사역자가 노회에서 비사역이라고 판단한 직종에 종사하며 목사로서의 소명을 버린 경우, 노회의 판단이 내려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목사직에서 해직된다. 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 해직된 바 있는 말씀사역자는, 그 해직을 결정한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청빙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입회하에 면담을 실시하여, 해직의 경위와 목회 사역에 대한 갱신된 소명을 검토하고, 모든 총회 규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빙이 확정되면 재안수를 받는다.

-보칙 제14조 e항 참조

### 보칙 제14조 b항

#### 본 교단을 사임하는 목사에 관한 선언

- a. 총회는 “모든 교회와 노회에게, 모든 사임(resignation)에 있어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해임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결의는 해당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 폭넓은 유연성을 허용한다(1978 총회록, p. 73).
- b. 그러한 해임 결의를 할 때, 교회와 노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함에 있어, 해당 목사가 직분을 떠나기까지 보인 태도와 정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파면(deposition)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단순 해직(release)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 c. 총회는 교회와 노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각 사안의 독특한 조건과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고(예: 절차를 따른 공식 사임인지

사실상의 해임인지 여부), 이를 확인한 후,

- 2) 사임하는 목사가 사임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인 태도와 정신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다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a) 사임하는 목사가 명예 해직된다(honorably released).
  - b) 사임하는 목사가 해직된다(released).
  - c) 사임하는 목사가 제명된다(dismissed).
  - d) 사임하는 목사가 파면된다(deposed).

참고: 은퇴하는 목사와 달리, 어떠한 형태로든 사임하는 목사는 CRC 교단에서 목사의 명예나 직함을 유지하지 않으며, 본 교단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제18조 b항 참조).

- d. 총회는 교회와 노회가 심의할 때, 다음 원칙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숙고할 것을 권고했다.
  - 1)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안수를 통해 맡겨진 거룩한 소명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고통과 상처를 초래한다.
  - 2) 교회와 노회가 내리는 모든 선언은 회복과 상호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1993 총회록, pp. 581-82)

### 보칙 제14조 c항

제14조 b항 보칙 규정은 제14조 c항 보칙에도 적용되며, 특히 목사가 징계 중이거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사임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 보칙 제14조 e항

제14조나 제17조에 따라 목사직에서 해직된 후, CRC 사역에 복귀하는 절차.

- 1. 제14조 b, c, d항 또는 제17조 c항이나 d항의 규정에 따라 해직된 목사가 다시 CRC 사역에 복귀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해직을 결정한 노회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a. 해직과 관련된 정황
  - B. 해직 이후 신청자의 신학적·목회적 여정
  - c. CRC 사역에 대한 소명의식과 새로워진 헌신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 절차를 위한 개시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신청이 승인되면, 노회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통지하여, 신청자가 기존 안수 이후에 총회가 규정한 목회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안내를 받게 한다. 신청자가 CRC 외부에서 사역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그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와 지역 의결기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심사한다.
-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신청자가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긍정적인 추천을 받은 후, 해당 목사를 해직 처리했던 노회에 통보한다.
- 신청자가 모든 규정을 충족했을 때, 해직 처리했던 노회는 해당 목사가 청빙 자격이 있음을 선포한다. 해직 처리했던 노회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가 청빙 자격을 승인하기 전에는, 해당 목사는 청빙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청빙 자격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청빙을 받거나 수락하지 않은 자가 청빙 자격을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그는 청빙 자격을 승인한 노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과거 목사였던 신청자에게 청빙 자격이 부여된 경우, 청빙교회의 노회 카운슬러 또는 노회 운영위원회는 모든 총회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후 안수 및 취임을 승인한다.
- 파면되었던 목사의 재위임에 관한 제84조 보칙의 규정은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임한 목사가 이후 제14조 e항에 따라 재안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016 총회록, p. 866)

(2025 총회록, p. 685-86)

## 제15조

각 교회는 카운실을 통해 소속 목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보칙 제15조 참조

### 보칙 제15조

#### “적절한 지원”의 정의

교회의 목사를 위한 적절한 지원에는 합당한 사례비, 의료보험, 장애보험, 주거 제공, 적절한 연금이나 은퇴자금 지급, 연장교육을 위한 비용, 그리고 그 밖의 사역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attend to)”는 표현은 청빙교회가 이 모든 항목을 직접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청빙교회는 목사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재정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지역교회들은 목사의 전임 또는 파트타임 목회를 위해 이러한 책임을 감당한다. 그러나 개척교회, 여러 형태의 채플린 사역, 겸직 목사, 여러 목회지를 담당하는 목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수입과 혜택이 재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청빙이 이루어질 때 혹은 목사나 교회가 재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 카운슬러가 해당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2024 총회록, p. 851)

목사와의 “적절한 지원” 관련 대화를 위한 교회 지침

- 교회가 제공하는 목사 사택의 가치는 사례비 패키지의 일부 또는 전부로 간주될 수 있다.
- 주당 20시간 이상 사역하고 목회자 연금(Ministers' Pension Plan)을 전액 납입하는 한 전체 연금 크레딧을 받는다.
- 직무의 성격과 소요 시간은 목사와 감독 카운실이 함께 분별하여 결정한다. 재정 지원을 포함한 지원 계획은 청빙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노회 카운슬러의 승인을 받고, 통상적으로 감독 카운실이 매년 검토해야 한다. 목회 및 비목회 업무를 모두 합한 주간 총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감독 카운실은 매년 목사에게 재정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영적 지원을 포함한 비재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5 총회록, p. 689)

## 제16조

타당한 사유로 교회사역을 일시적으로 휴직하기 원할 경우, 목사는 카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중에도 카운실의 감독을 계속 받는다. 또한 카운실은 일시적인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목사와 협의하여 휴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일시 휴직의 경우, 기본 의도는 해당 목사가 본 교회 사역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보칙 제16조 참조

### 보칙 제16조

카운실은 노회 교회방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에만 휴직 허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교회방문단은 해당 상황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교회헌법 제42조 b항). 초기 휴

직은 6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교회방문단의 추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카운실이 허락하는 일시 휴직은 1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 제17조

- a. 은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목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 카운실, 또는 양측의 공동 요청에 의해 교회로부터 청빙된 현 목사직으로부터 해직될 수 있다. 이러한 해직은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 총회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만 허락된다.

-보칙 제17조 a항 참조

- b. 카운실은 해직된 목사의 생활을 지원해야 하며, 그 방식과 기한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c. 사역으로부터 해직된 말씀사역자는 2년 동안 청빙받을 자격을 가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목사의 목사직이 해직되었음을 공표한다. 노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빙자격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d. 경우에 따라, 해직된 목사가 평가 및 조언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노회가 그에게 청빙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목사가 목사직에서 해직되었음을 공표한다.

## 보칙 제17조 a항

### 목사의 교회 사역으로부터 사임에 관한 규정

#### a. 일반규정

- 1) 모든 제17조에 따른 사역 관계의 분리(separations)는, 그것이 목사의 요청이든 목사와 카운실의 공동 요청이든, 청빙한 카운실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간주되며, 노회는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2) 목사, 교회, 그리고 노회는 제17조에 따른 사역 관계 분리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단 자료들을 참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노회 대표자의 참여와 더불어), 외부 자문이나 중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3) 모든 경우, 카운실과 목사는 분리의 공식적인 사유, 발효일, 당사자 간 합의된 재정 조정 내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한 공식 분리 합의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카운실이 제17조에 따른 사역 관계 분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목사와 카운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노회는 해당 사안을 별도로 심의한다.

- 4) 노회는 회의록에 분리의 근거, 예를 들어 가정 상황, 갈등, 학위, 교회 폐쇄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제17조에 따른 사역 관계 분리는 총회 및 관련 교단 기관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카운실과 노회는 총회가 채택한 “교회 사역으로부터의 사임 규정”(2024 총회록, pp. 859-64; 1998 총회록, pp. 392-96; 2010 총회록, pp. 915-16)에 유념한다.

- 5) CRC 카운실과 타 교단 교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청빙으로부터의 분리는 2024년 총회가 확립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2024 총회록, pp. 859-64).

- 6)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인 돌봄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인들은 계속적인 지원과 애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목사와 그 가족 역시 잊혀져서는 안 된다. 교회와 노회는 그들의 개인적 회복과 향후 사역의 기회를 격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지속적인 목회적 지원과 돌봄을 제공한다.

- b. 노회는 사임한 목사가 새로운 청빙을 받기 전에 평가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임을 결정하는 시점에 해당 목사가 청빙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한다.

- 1) 노회는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임명하여, 해당 목사가 목회 사역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문적 역량과 개인적·정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감독한다. 노회와 감독위원회가 합의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평가자가 이 평가를 수행한다(Thrive 교회사역부는 적합한 평가자를 추천할 수 있다). 노회는 평가나 개인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결정한다.

- a) 이 위원회는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되며, 분리가 이루어진 교회의 카운실 구성원 한 명을 포함할 수 있다.

- b) 이 위원회는 노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목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대 사항을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루어질 사안들은 카운실과 노회가 해당 목사와 협력하여 제기한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 c) 이 위원회는 매 정기 노회 회의에서 경과를 보고한다.

- d) 평가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는 해당 목사의 청빙자격에 관해 노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 2) 해당 목사는 아래와 같이 평가와 조언의 과정에 참여한다.

- a) 해당 목사는 평가자(들)가 작성한 세부 사항과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감독위

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b) 위에서 규정한 평가 외에도, 해당 목사는 자신과 감독위원회가 합의한 상담사와 함께, 노회가 요구하는 개인 상담을 받는다.

3) 노회는 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당 목사의 청빙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4) 노회가 해당 목사의 청빙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목사를 목사직에서 해직시킨다.

5) 교회를 사임한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평가 기간 도중에 자신의 교적과 목사 교적을 동일한 노회 내의 다른 교회로 이적할 수 있다. 노회가 해당 목사가 청빙자격을 인정할 경우, 그 목사의 교적을 보유한 카운실은 그가 청빙받을 수 있음을 공표한다.

6) 교회를 사임한 목사는, 사임한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자신의 청빙자격을 공표한 후, 노회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교적과 목사 교적을 다른 노회의 교회 카운실로 이적할 수 있다. 해당 목사의 교적을 보유한 카운실은 그가 청빙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다.

c. 목사와 분리된 교회가 다른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 평가와 조언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할 경우, 분리 시점에 다른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 교회가 충족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1) 노회는 해당 교회 카운실 담당 노회 카운슬러와 최소 다른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임명하여 평가 과정을 계획하고 그 진행을 감독한다.

2) 감독위원회는 카운실과 협력하여, 임시 목회자(가능하면 전환기 전문 목사)를 세우고 사역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Thrive는 임시 목회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감독위원회는 매 정기 노회 회의에 이 과정을 보고한다.

4) 노회는 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해당 교회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최종 결정한다.

(2003 총회록, pp. 623-24)

(2025 총회록, pp. 687-88)

## 제18조

a. 목사는 은퇴 연령에 이르렀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은퇴할 수 있다. 은퇴는 카운실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은퇴한 목사는 말씀사역자로서의 직함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사역을 수행할 권위를 갖는다. 은퇴목사의 감독 책임은 다른 교회로 교적을 이전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에 있다. 감독 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해당 목사와 부양가족을 적절하게 지원할 책임이 있다.

c. 은퇴한 사유가 사라질 경우, 해당 은퇴목사는 자신의 은퇴를 결의한 카운실과 노회에 청빙자격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칙 제18조 참조

## 보칙 제18조

### 은퇴

목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66세에 은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2011 총회록, p. 813)

(은퇴목사가 은퇴 후에도 동 교회의 교인으로 남아 있거나, 은퇴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목사에 대한 감독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은퇴 후 자신이 교인으로 출석하는 교회로 옮길 수 있다.

은퇴목사에 대한 감독을 이전할 경우, 은퇴목사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의 카운실이 그가 소속을 옮기려는 교회의 카운실에 해당 은퇴목사에 대한 감독을 맡아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1968 총회록, p. 69)

### 조기 은퇴

말씀사역자는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아 55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경우, 은퇴목사는 2011년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1993 총회록, p. 579)

(2011 총회록, p. 813)

### “공식 사역”

1. 말씀 선포, 성찬 집례, 회중을 향한 축도, 새 임직자에 대한 안수, 교인의 입교와 전출 입 등과 같은 특정한 사역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의 일부로서 교회에 맡겨진 것이다. 이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특정 직분에 국한되지 않고, 안수를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임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2. 그러므로, 오래된 조직교회이든 새로 세워진 교회이든, 말씀사역자나 위탁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예전적 사역의 유익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3. 이러한 사역의 행위는 주님과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며 강화한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굳건히 하도록 위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 직무의 시행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2001 총회록, p. 504)

#### 제19조

교회는 말씀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유지해야 한다. 이 신학교는 총회가 임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감독을 받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20조

신학교수로 임명된 말씀사역자의 직무는 신학생을 말씀사역자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를 변증하는 것이다.

#### 제21조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사역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노회와 협력하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보칙 제6, 7, 8조 참조

#### 제22조

총회 규정에 따라 설교 인허를 받은 신학생은 공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다.

-보칙 제22조 참조

#### 보칙 제22조

##### A. 설교 인허 규정

1.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설교 인허를 부여한다.

- a. 말씀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한 자.
  - b. 성경, 신학, 그리고 설교 과목을 포함한 신학교 1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
2.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해당 신학생들이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설교 인허를 허락하지 않는다.
    - a. 본 교단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인인가?
    - b. 사역에 필요한 영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위해 준비하도록 부르셨다고 확신하는가?
    - c. CRC 교단에서 사역할 것인가?
    - d.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 e.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적절히 말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신학교 교수로부터 얻을지, 신청자를 직접 심사하여 얻을지 여부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재량에 맡긴다.
  3.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추가로 공부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설교 인허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a. 인허 연장의 특권은 대학원 이후 과정을 수학하면서, CRC 교단에서 사역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자에게 부여한다.
    - b. 인허의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c. 1년 이상의 연장은 첫째 말에 신청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허락될 수 있다. 2년째 말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두 번째 심사를 받아야 한다(단, 본 규정 3항 c의 후반부는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a. 신학 교육을 마쳤지만 말씀사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나 절차를 밟지 않은 자.
    - b. 신학교 학부 과정 중 학업을 중단했거나, 이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

(1936 총회록, pp. 46-48)

(2004 총회록 개정, pp. 619-20)

(2010 총회록 개정, p. 909)

## B. 국제학생에 대한 설교 인허

1. 해당 학생은 건전한 개혁신교회의 정교인이며, 본 교단 신학교의 정규 또는 특별 과정의 학생이어야 한다.
2. 해당 학생은 본 교단 신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교수진이 그 학문적 능력과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해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당 학생은 본 교단 신학교에서 요구하는 설교학 과정을 이수했거나, 다른 학교에서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본 교단의 설교학 교수가 그 학생의 설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교 인허 요청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가 지명한 자가 신청자를 면접해야 한다.
6. 학생의 설교는 칼빈신학교의 주관 아래 시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주선해서는 안 된다.
7. 설교 인허는 학생의 칼빈신학교 재학기간 중에 한하여 유효하다. 인허의 연장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961 총회록, p. 36)

## C. 위탁목사

### 제23조

- a. 위탁목사의 임무는 말씀의 설교, 성례의 집례, 교회 교육, 목양, 전도 및 기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는 신자들이 온전한 제자도로 부름 받고,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부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칙 제23조 a항 참조

- b. 위탁목사는 카운실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사역하며, 카운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특히 자신의 사역에 관해 논의될 때에는 카운실에 참석해야 한다.
- c. 위탁목사는 자신을 청빙한 교회의 위탁목사로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카운실에서의 그의 직무는 위탁목사로서 수행하는 사역으로 제한된다.
- d. 각 교회는 카운실을 통해 위탁목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보칙 제23조 a항

위탁목사의 직분은 2001년 총회가 채택한 지침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역에 적용된다.

전도목사(Evangelist)[\*]의 직분은 목회사역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도목사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며, 조직교회의 사역을 청소년 사역, 교육 사역, 목양, 예배, 전도 등 다양한 특수 분야로 연장하는 목회를 한다... 전도목사 직분을 기존의 규정 안에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목회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교단은 목사직의 수를 늘리는 대신, 교단 내 여러 형태의 목회 사역을 인식하고 질서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직책은 채플린, 교육목사, 청소년목사, 교구목사 등과 같은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2001 총회록, p. 506)

[참고: Evangelist 직분은 2001년에 전도사역자로 불렸다가, 2003년 총회에서 ministry associate, 전도목사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총회에서 commissioned pastor, 위탁목사로 변경되었다.]

모든 위탁목사 직책은 2001년 총회가 채택한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노회가 승인한다. 모든 위탁목사는 청빙받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고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위탁목사에 대한 고시는 총회가 규정하고 위탁목사 핸드북에 기록된 지침을 따라 진행된다.

위탁목사 핸드북은 총회가 승인한 지침과 규정을 제공하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 핸드북에는 고시 절차, 직무설명서 작성, 그리고 위탁목사로 안수받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

(2019 총회록, p. 783)

말씀사역자로 안수받은 교회 외의 사역 목사의 직무, 특성과 지침 원칙은 제23조에 따라 교회 외의 사역으로 안수받은 위탁목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플린 사역과 관련된 위탁목사의 직무설명서는 Thrive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2003 총회록, p. 613)

(2025 총회록, p. 659)

### 보칙 제23조 d항

#### “적절한 지원”의 정의

위탁목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는 합당한 급여, 의료보험, 장애보험, 주택 제공, 적절한 연금 또는 은퇴기금, 연장교육비, 그리고 기타 사역 관련 항목이 적합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attend to)”는 표현은 청빙교회가 이 모든 항목을 직접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빙교회는 위탁목사가 이 항목들을 포함한 재정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지역교회들은 목사의 전임 또는 파트타임 목회를 위해 이러한 책임을 감당한다. 그러나 개척교회, 여러 형태의 채플린 사역, 겸직 목사, 여러 목회지를 담당하는 목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출처의 수입과 혜택이 재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청빙교회의 경제적 지원 계획은 노회가 위탁목사의 사역을 승인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겸직 사역에 대한 청빙 또는 목사와 교회가 재정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목사와의 “적절한 지원” 관련 대화를 위한 교회 지침

1. 교회가 제공하는 목사 사택의 가치는 사례비 패키지 일부 또는 전부로 간주될 수 있다.
2. 직무의 성격과 소요 시간은 위탁목사와 감독 카운실이 함께 분별하여 결정한다. 재정 지원을 포함한 지원 계획은 직무설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노회가 승인하고, 통상적으로 감독 카운실이 매년 검토해야 한다. 목회와 비목회 업무를 모두 합한 주간 총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독 카운실은 매년 위탁목사에게 재정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영적 지원을 포함한 비재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4 총회록, pp. 852-53)

## 제24조

- a. 위탁목사는 조직교회에서 단독 또는 담임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 이는 노회의 허락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목사 핸드북에서 명시된 총회 승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칙 제24조 a항 참조

- b. 위탁목사는 말씀사역자로 안수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수하도록 책임 있게 진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빙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빙의 기간과 학습 계획의 진전 감독은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칙 제24조 b항 참조

- c. 위탁목사가 자신의 지정된 사역 범위나 직무를 넘어 사역하고자 할 경우, 카운실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칙 제24조 c항 참조

- d. 위탁목사직의 폐지나 위탁목사의 해직은 총회가 승인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 해당 직책을 승인한 노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칙 제24조 d항 참조

- e. 위탁목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회는 그 판단에 따라 은퇴 위탁목사(Commissioned Pastor Emeritus)의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보칙 제24조 e항 참조

참고: 아래 제안된 제24조 e항은 2026년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비준될 경우, 현행 제24조 e항은 제24조 f항이 되며, 그 보칙은 보칙 제24조 f항이 된다.

- e. 직무에서 해직된 전 위탁목사가 청빙교회의 노회에서 위탁목사로 안수를 위한 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직 처리했던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칙 제24조 a항

이미 안수받은 위탁목사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교회의 단독(solo) 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1. 교회를 개척한 위탁목사는 해당 교회가 조직교회로 전환된 후에도 “합리적인 과도기” 동안 계속 사역할 수 있다.
2. 조직교회에서 말씀사역자와 함께 사역하던 위탁목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말씀사역자가 사임할 때 단독/담임목사의 직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
3. 특수한 사역 환경에 따라 위탁목사가 조직교회에 청빙될 수 있다.
4. 위탁목사직을 말씀사역자가 되기 위한 “다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독 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제24조 b항).

위의 네 가지 경우 모두 위탁목사 핸드북(제4부, C와 D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미조직교회(emerging church)나 조직교회에서 단독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위탁목사는 노회와 협력하여 교단 사역을 위한 상황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 계획은 노회에서 채택되고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탁목사 핸드북 참조). 또한, 조직교회에서 단독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된 위탁목사는 노회의 승인과 함께, 고시에 참석한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5 총회에서 개정, p. 660)

#### 보칙 제24 b항

안수받은 위탁목사가 조직교회에서 단독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고 말씀사역자로 안수받아야 한다. 위탁목사가 조직교회의 단독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되기 전에 학습 계획 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갱신 가능한 “임기 청빙”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목사가 해당 학습 계획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2025 총회에서 개정, pp. 663-64)

#### 보칙 제24조 c항

때때로 지역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위탁목사가 다른 청빙교회로의 사역 전환을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탁목사의 사역 이동에 관련된 여러 상황들은 위탁목사 핸드북에서 다루고 있다.

#### 보칙 제24조 d항

총회는 여러 상황에서, 승인된 위탁목사 직무의 종결, 위탁목사의 사임, 위탁목사의 해직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왔다. 또한 총회는 사역을 종결한 위탁목사의 지위를 노회가 적절하게 공표할 것을 지시했다. 위탁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지침과 선택사항은 말씀사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며, 보칙 제14조 b, c항, 2목과 위탁목사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칙 제24조 e항

은퇴 위탁목사는 노회의 판단에 따라, 은퇴 이전 위탁목사로 수행하던 사역의 성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식 사역을 계속할 권위를 유지한다. 은퇴 위탁목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관련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회로 이전되지 않는 한, 그가 마지막으로 사역한 교회에 있다.

(2019 총회록, p. 783)

참고: 아래에 제안된 보칙 제24조 e항은 2026년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변경이 비준될 경우, 현재의 보칙 제24조 e항은 보칙 제24조 f항으로 조정된다.

#### 보칙 제24조 e항

아래의 경우, 이전 노회는 해직과 관련된 상황 및 사역에 대한 새로워진 소명과 의지를 검토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한다.

- 위탁목사가 비목회 직종이나 교단 밖의 사역을 위해 해직된 경우
- 위탁목사로 사역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전 노회가 승인에 앞서 당사자와의 추가 면담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른 청빙을 수락한 것 이외의 사유로 해직된 경우

이전 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해당 직위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이전 안수 때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 영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후 청빙교회의 노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신청자는 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제안된 위탁목사 재진입 절차에는 총회 대리인의 승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총회 대리인의 역할이 위탁목사 직무설명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한정되며, 사역자 개인의 자격을 평가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2026 총회록, p. \_\_)

## D. 장로와 집사

### 제25조

- a. 장로와 집사는 카운실이 정한 임기동안 사역한다. 임기는 사역의 연속성과 지도력의 승계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휴무하는 직분은, 교회의 형편과 유익상 즉시 재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다른 직분자가 그 직분을 계승한다. 이와 같이 재선출된 장로와 집사는 재취임한다.
- b. 장로는 목사와 함께, 성도와 동료 직분자들의 교리와 삶을 감독하며, 교회에서 심방을 포함한 목양사역과 더불어 권면과 훈육을 시행하며, 복음 전도에 참여하며 이를 증진시키고, 신앙을 수호한다. 교회의 목자로서 장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또한 장로는 격려하고 가르치며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성도들이 감사와 순종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양육한다.
- c. 집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고 섬긴다. 집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신실하게 관리하도록 격려하며,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구현하도록 인도한다. 따라서 집사는 지역적·세계적으로 구제, 정의, 화해의 사역과 구조 안에서 참여와 협력을 조성하고 격려한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의 권면과 간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말과 행위의 일치 속에서 수행된다.

## II. 교회의 의결기구

### A. 일반규정

#### 제26조

본 교단의 의결기구는 카운실, 노회, 총회이다.

#### 제27조

- 각 의결기구는 그 고유한 성격과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교회적 권위를 행사한다. 카운실의 권위는 모든 의결기구의 근본이 되며, 상위 의결기구의 권위는 카운실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 노회가 카운실에 대해 갖는 권위는 총회가 노회에 갖는 권위와 동일한 것이다.

#### 제28조

- 이 의결기구들은 교회적 사안들만 다루며, 이를 교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 상위 의결기구는 소속 교회들이 공동으로 관련된 사안이나, 하위 의결기구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만을 다룬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제출되는 사안은 노회와 총회의 진행 규칙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 제29조

교회 의결기구의 결정은 신중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헌법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없는 한, 확정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 제30조

- 교회와 교인은, 불공정한 일이 행해졌거나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헌법에 위반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인은 상소의 방식과 기한에 관한 모든 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총회는 기타 상소에 관한 제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제출된 상소는 재판국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단, 상소를 접수한 의결기구가 제30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소에 대해 이미 분명하게 처리하고 확정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칙 제30조 a-c항 참조

#### 보칙 제30조 a항

##### 교회헌법 제30조 a항에 따른 상소 절차 규정

##### A. 카운실(피상소인)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성도(상소인)가 상소하는 경우

- 시효: 상소는 해당 결정이나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단, 그 결정이나 조치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관행을 유발하는 경우, 그 관행이 실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상소는 적기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노회는 상소인이 지연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노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상소도 접수할 수 있다.
- 구두 진술: 노회가 상소를 심의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 모두에게 상소 사안에 관해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을 부여한다.
- 학대에 관한 노회 상소 절차

총회 대리인의 참여: 교회 지도자에 대한 학대 혐의가 포함된 카운실의 결정에 대해 노회에 상소가 제기될 경우, 총회 대리인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모든 관련자가 정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회에 자문한다(교회헌법 제48조 c항에 의거).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교회 지도자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자문단 조사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상소를 처리하기 전, 노회 대의원들은 공정한 처리 절차, 학대 인식과 대응에 관하여 Thrive 안전한교회 사역부의 60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독립 조사: 조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경우, 노회나 그 운영위원회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독립 조사를 강력히 권장한다.

- 신고자(claimant) 또는 피신고자(accused)가 관련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이 특히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관할국이 여러 곳인 경우
- 실제적 또는 인지된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

- d. 해당 사안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나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노회에 상소된 경우

####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노회의 책임:

- 절차 오리엔테이션: 노회나 그 운영위원회는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사항과 준비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비밀유지 서약: 상소를 심의하는 노회 대표단은 총회 절차 규칙(섹션 V, B, 11)에 따라, 관련자들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증언 및 논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한 경우, 그가 속한 카운실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 소통: 상소 사안을 다루는 노회의 행정총무는 노회의 결정을 신속하게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속 조치: 상소 절차가 종료되면, 노회 교회방문단 또는 노회 안전한교회 코디네이터는 학대 혐의와 상소 절차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사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노회의 조치: 노회는 적법하게 제출된 모든 상소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노회는 행정총무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노회가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노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총회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총회에 상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B. 노회(피상소인) 결정에 불복한 성도 또는 의결기구(상소인)가 총회에 상소하는 경우

- 상소 시효: 상소는 해당 결정이나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상소 접수기한: 통상적으로 상소가 총회에서 심의되려면, 그 해 3월 15일까지 교단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월 15일 이후 접수된 상소는 해당 연도의 총회에서 심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권고가 있다면, CRC 교단 대의원회에서 해당 상소를 같은 해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상소는 총회 안전집에 게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CRC 교단의 대의원회가 상소에 대한 총회의 결정이 해당 노회를 넘어 광범위하

게 적용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소와 그에 대한 답변, 또는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상소와 답변에 대한 요약본을 총회 안전집에 게재할 수 있다. 상소가 3월 15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답변 제출 기한이 3월 15일 이후인 경우, 사무총장은 피상소인과 의논하여, 상소를 안전집에 포함하고 주어진 답변은 총회가 시작될 때 총대들에게 배포하거나, 해당 상소를 다음 총회로 이월할 수 있다.

-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의결기구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교회의 교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총회에 해당 사안이 상정될 때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건의와 총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총회 본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할 특권을 가진다.
- 분과위원회는 각 상소와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분명하고 충분히 정리하여 총회 전체에 보고해야 한다.
- 안전집에 게재되지 않은 상소와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련 주요 문서는 임명된 분과위원들에게 가급적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 교회 지도자의 학대 혐의와 관련된 노회의 결정이 총회에 상소된 경우, 총회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공정한 절차, 학대 인식과 대응에 관한 Thrive 안전한교회 사역부의 60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C. 일반규칙

- 상소서 제출: 상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소가 제기되는 상위 의결기구인 노회의 행정총무 또는 교단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상소서의 사본은 상소의 대상이 되는 의결기구의 서기 및 상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 상소서 양식: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의 요소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상소인 이름
  - 피상소인 이름
  - 상소 대상이 되는 결정
  - 상소인이 해당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
  - 의결기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배경 자료
  - 상소인이 의결기구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진술
- 피상소인의 답변: 피상소인은 상소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피상소인은 상소서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소가 제기된 의결기구의 서기

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사본은 상소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4.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의결기구나 그 위원회에 출석할 때, 교인을 대리인 또는 조언자로 둘 권리를 가진다.

(2022 총회에서 개정, pp. 851-52)

#### 보칙 제30조 b항

본 보칙은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을 규정한다. 첫째는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가 제출한 목사 후보 자격 신청에 대한 교단 차원의 검토이며, 둘째는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교단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에 대한 상소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적용되는 각각의 절차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안 A.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가 제출한 목회 후보 자격 신청에 대한 교단 차원의 검토

신청자가 목사 후보 자격 신청 처리 과정에서 칼빈신학교 이사회 및/또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교회헌법의 개정이나 총회 결의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다. 이 절차는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목사 후보 자격 신청이 당시 유효한 자격 요건(그 요건이 교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든, 또는 총회의 별도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든)에 근거하여 총회가 재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형태의 상소로서, 재판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 상소 절차에 관한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칼빈신학교 이사회나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자의 후보 신청 처리 과정에서 거부할 경우, 또는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그 조치나 결정을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총회에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사 후보 자격 신청을 계속 진행할 선택권이 있다. 이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신청자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앞 항에 서술된 통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은 계속 처리되어야 하며,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안과 그 근거를 첨부해 그 신청서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4. 신청자는 총회가 소집되기 최소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진술

서, 주장 및 근거 그리고 관련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총회는 신청서와 첨부 자료, 이사회나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결정 및 근거를 검토한다. 신청자와 영입인준 위원회는 지정된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해당 분과위원회가 권고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와 영입인준 위원회는 총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진술할 시간을 부여받는다.
6. 신청자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검토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그 교회의 교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안 B.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교단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에 대한 상소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교단 위원회들의 결정, 조치 및 행위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러한 상소에는 재판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상소 절차는 재판국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반대로 재판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1. 이사회, 교단 사역기관 또는 위원회란, 그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이 해당 기관의 권한과 직무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역자나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보칙 제30조 b항에 따른 상소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a. 북미주 개혁교회의 성도
  - b. 의결기구(카운실 또는 노회)
  - c. 상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를 행한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직원
3. 상소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의결기구를 상소인이라 하며, 상소의 대상이 되는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피상소인이라 한다.
4. 상소인은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불만이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기 전에는, 보칙 제30조 b항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 조항에 따른 상소의 근거는, 피상소인의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가 교회헌법, 피상소인의 위임된 직무 또는 피상소인이 소속된 상위 의결기구의 이전 결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결기구나 직원이 아닌 개인이 본 조항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소인은 피

상소인의 결정, 조치 및 행위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어 자신에게 물질적 또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7.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소인은 피상소인의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가 자신에게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물질적 또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8.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 및 행위에 대한 상소는 해당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보고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9. 상소는 위 4항의 규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절차의 완료 시점이 상소 제기 기한인 90일의 시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소 제기 기한의 시작일을 판단한다.

a.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상소인에게 고충이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상소 기한은 상소인이 그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계산한다.

b. 위 a항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상소인은 해당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고충이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이 통보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보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상소 제기 기한 90일이 시작된다. 본 항에서 통보의 접수일은, 서면을 교단 산하기관 사무실,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당일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5일이 지난 날로 본다.

c.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 b항에 언급된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상소인에게 추가로 진행해야 할 내부 절차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상소인은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추가 절차가 완료된 후 상소 제기 기한의 시작일을 정할 때에는, 위 a항과 b항의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10. 상소가 노회에 제출된 경우, 노회가 상소를 심의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 모두 상소와 관련하여 구두로 진술할 합당한 시간을 부여한다. 노회는 접수받은 모든 상소들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노회 행정총무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노회가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노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총회에 직접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노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11. 상소가 처음부터 총회에 제기되는 경우, 보칙 제30조 a항의 B, C에 명시된 규칙과 절차를 따른다.

12.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소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교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그의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보칙 제30조 c항

### 재판국의 권리와 절차 규정

#### 재판국 규정 서문

1977년 총회는 권리와 절차에 관한 재판국 규정의 초판을 채택했다. 이는 “교단 내에서 사안이 재판에 부쳐질 때, 보다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총회는 이 규정이 “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연관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공의로운 판단을 행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신 1:16-17; 신 16:18-20; 레 19:15; 딤후 5:19-21)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재판국 규정 지침서”는 실질적인 사안을 “교회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며(교회헌법 제28조), 총회는 본 재판국 규정이 “사랑의 법을 충족시키는 절차적 틀을 제공한다”(약 2:1, 8-9)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국 규정은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규정은 최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의도된 것인데, 이는 재판 청문(hearing) 절차와 그에 따른 의결기구의 결정이 당사자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국 청문회와 그 결과로 내려지는 의결기구의 결정은 화해 자체를 1차적 목표로 삼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이 규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분쟁 과정에서 손상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재판국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훈련된 조정자나 중재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중립적인 제3자가 주도하는 중재 절차는 보다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실천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5년 총회는 “가능한 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적 정의 사역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교회와 학교, 교단 사무국, 기

타 기독교 기관과 가정이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2005 총회록, pp. 761-62).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데 더 큰 가능성을 가져온다.

한편,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회복적 정의나 중재 절차가 반드시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은 우선적으로 총회가 승인한 자문단 조사과정(Advisory Panel Process)을 따라, Thrive의 안전한교회 사역부와 협력하여 진행된다(2010 총회록, p. 866; 2010 총회 안전집, pp. 497-502 참조).

그러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공식적인 청문회가 요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결기구는 사안의 해결을 위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충분한 절차적 노력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결기구는 추가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 청문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아래에 규정된 대로 공식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국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표준 교리, 또는 교회헌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발생한 분쟁은 재판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로 한정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나, 재판국 규정은 이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대체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재판국 규정의 목적은 그 적용 범위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교회적 결과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의결기구는 민사나 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자격 있는 법률 자문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 섹션 1: 재판국 규정의 범위

- a. 하나님의 말씀, 표준 교리 또는 교회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발생한 분쟁은 재판국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특히 재판국 규정은 카운실·노회·총회에서의 혐의 서면 제출 절차와 공적 청문회 절차 그리고 청문회 결정에 대한 상소 절차를 관장한다.
- b. 권고나 징계에 관한 사안은, 양 당사자 또는 의결기구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면 혐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공적 청문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국 규정은 권고와 징계 사안의 근본적·우선적 성격이 목회적 돌봄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안은 목회적 상담과 권면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만일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 결정은 교회헌법에 따라 교회가 판단한다.
- c. 재판국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룬다.
  - i) 교인과 교회의 의결기구 사이의 분쟁 그리고 드물게 비교인과의 분쟁(섹션 3-a 참조).

- ii) 해임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교단의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와 교인 또는 교회 의결기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섹션 3-a, 5-d, 5-e 참조).

d. 이에 관련하여 재판국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i) 서면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는 물질적 또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직원 또는 의결기구가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 ii)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최초로 고소를 접수한 의결기구가 정식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경우.

### 섹션 2: 재판시 권리

- a. 고소인과 피소인은 모든 청문회에서 1인 또는 2인의 CRC 교인을 대리인이나 조력자로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진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의결기구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 교인 자격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b.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의결기구가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인과 피소인은 재판국 청문회 및 그 청문회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다루는 재판국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 c. 제5조 a항에 규정된 제한을 제외하고, 고소인과 피소인은 증인이 자신들 앞에서 심문 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d. 고소인과 피소인은 의결기구의 결정을 그 다음 상위 의결기구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e. 재판국 규정의 절차는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모든 상소에 적용된다.
- f. CRC 소속 단체나 교인, 그리고 해당 사안에 연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상소를 포함한 해당 사건이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고소 내용에 관한 주장이나 요약글을 어떠한 매체로든 쓰거나 인쇄하여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 g. 재판국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자연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이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한다.
- h. 모든 청문회는 사려깊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섹션 3: 서면 고소 제출 절차

- a. 서면 고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 i) CRC 교인이 다른 교인 또는 의결기구를 상대로

- ii) 의결기구가 다른 의결기구나 개인을 상대로
- iii) CRC 교인이 아닌 개인이라도, 해당 혐의로 인해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CRC의 개인이나 의결기구를 상대로
- iv) CRC의 개인이 교단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를 상대로
- v) 의결기구가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상대로
- vi) 해임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교단의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의 직원이 해당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를 상대로
- vii) 당회에 의해 정직(교적 정지)되었거나 제명된 교인. 이러한 개인은 해당 정직 또는 제명 조치를 노회가 재검토하도록 서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국 규정 절차에서 노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보칙 제78-81조 d항 참조).
  - 1)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판단한다.
  - 2) 해당 개인이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 3) 당회가 징계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판단한다.

#### b. 전제조건

- i) 고소 내용이 CRC 안전한교회 사역부의 자문단 조사과정(Advisory Panel Process)에 규정된 교회 지도자에 의한 학대에 해당할 경우, 고소인은 그 문서에 명시된 절차와 비밀유지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이는 본 규정 섹션 2-5에 따른 절차를 대신한다. 이 절차는 해당 교회 지도자에 관한 카운실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규정 섹션 6-7에 따라 노회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ii) 교단의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고소나 서면으로 불만 제기는, 고소인이 해당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모든 해결 노력을 다하기 전까지는 접수될 수 없다.

#### c. 접수 시효:

- i) 성적 학대에 대한 서면 고소에는 시효가 없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는 CRC 안전한교회 사역부의 자문단 조사과정에 따라 우선 제기되어야 한다.
- ii) 아동에 대한 비성적 학대에 관한 고소는, 고소인이 만 25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성적 아동 학대 혐의는 CRC 안전한교회 사역부의 자문단 조사과정에 따라 우선 제기되어야 한다.
- iii) 그 밖의 모든 서면 고소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d. 서면 고소를 제기하는 개인 또는 의결기구를 '고소인'이라 하고, 서면 고소를 제기당한 개인 또는 의결기구를 '피소인'이라 한다.
- e. 서면 고소장은 해당 의결기구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장하는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가능한 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그 고소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f. 하나의 서면 고소에는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포함할 수 없다. 동일한 피소인에 대해 여러 건의 서면 고소가 제출될 수 있으며, 이를 함께 심리할 수 있으나 각 서면 고소에 대한 결정은 개별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 g. 고소인은 고소장을 의결기구에 제출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우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피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h.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소인은 의결기구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우편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피소인은 답변서에서 청문회 요청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i. 의결기구의 관할권
  - i) CRC 교단 성도를 상대로 한 서면 고소는, 고소인이 피소인이 소속된 지역 교회의 카운실에 제출해야 한다.
  - ii) 의결기구에 대한 서면 고소 또는 섹션 3 a, vii에 따라 당회를 상대로 하는 서면 고소는, 해당 의결기구의 상회기관(순서는 카운실, 노회, 총회)에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
  - iii) 교단의 사역기관, 이사회, 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서면 고소는, 해당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가 보고하는 의결기구에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
  - iv) 피소인이 카운실이거나 노회의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인 경우, 청문회는 본 규정 섹션 2-5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노회에서 진행된다.
  - v) 피소인이 노회이거나 총회의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인 경우, 청문회는 본 규정 섹션 2-5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판국에서 진행된다.

#### 섹션 4: 청문회 이전 절차

- a.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회는 서면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 b. 사무총장실은 청문회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고소인과 피소인을 도울 의사가 있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관리한다. 이 명단은 고소인 또는 피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증인 및 증거물 목록의 준비, 청문회 전에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하기로 선택한 기타 사전 공개 자료나 서면 제출물의 준비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이다. 각 당사자는 청문회 이전 제출물을 직접 준비할 책임을 가지며, 자원봉사자가 이를 대신할 의무는 없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고소 내용의 타당성이나 법적 판단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당사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문회 이후 내려진 결정에 대해 상소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c. 의결기구는 고소인 및 피소인과 협의한 후, 서면 고소에 대한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청문회 개최 최소 45일 이전까지 날짜를 확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d. 청문회 개최 최소 30일 이전까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과 의결기구에 청문회에서 증언할 증인 명단과 제시할 증거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증인 또는 증거물이 제출 마감일까지 발견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리 공개된 증인과 증거물만 사용할 수 있다.
- e. 의결기구는 재량으로 양측이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제시하려는 증인, 문서, 증거물, 주장에 관해 추가적인 사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f. 카운실 또는 노회에 서면 고소가 접수된 경우, 해당 카운실 또는 노회가 재판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자를 제외한 해당 의결기구의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이해상충이 있는 구성원은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 g. 고소인 또는 피소인은 특정 구성원이 자기이익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거나, 청문회 당사자와의 관계 또는 그에 대한 책임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성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결기구가 다수결로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구성원은 청문회에서 제외된다.
- h. 청문회에 앞서, 의결기구는 서면 고소가 청문회를 열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단은 고소장, 답변서, 제출 예정의 증거물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결기구가 원할 경우 당사자 및 그 대표들과의 비공식 면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의결기구는 이러한 정보 검토와 비공식 면담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의결기구가 서면 근거를 명시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 i. 고소인 또는 피소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결기구가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기구는 해당 절차를 비공개로 유지하며 어떠한 참가자도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비공개 지시 사항은 회의록에 명시된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섹션 5: 청문회 절차

- a. 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i) 양측은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모두발언을 할 수 있다.
  - ii) 고소인은 증인과 증거물을 포함한 자신의 입증자료를 먼저 제시한다. 또한 의결기구가 재량으로 허락하는 경우, 고소인은 피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iii) 그 후에 피소인이 증인과 제시물을 포함하여 자신의 증거를 제시한다.
  - iv) 증거의 채택은 공식적인 증거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서 절차 역시 요구되지 않는다.
  - v)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시된 증거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증거를 제외시킬 수 있다.
  - vi) 청문회에서 양 측은, 청문회 최소 15일 전에 증인의 서면 진술을 받아들이기로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출석한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의장은 증인을 질문하는 방식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장은 질문을 청문회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증인에 대한 질문을 고소인이나 피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정할 수 있다.
  - vii) 모든 증거가 의결기구에 제시된 후, 고소인과 피소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고소인에게서는 피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 viii) 어느 한 측이 절차상의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이의는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의장은 해당 이의를 인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가 제기되면, 의결기구는 의장의 결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 b. 증언은 요약해서 기록한다.
- c. 고소인은 서면 고소 내용을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 서면 고소는 분명하고 만족할 만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확신의 수준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분명하고 만족할 만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란, 반대되는 증거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설득력을 갖는 증거를 의미한다. “합리적인 확신”이란 제시된 증거를 이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설득되는 상태를 말한다. 절대적 확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추측은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
- d.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상대로 직원이나 의결기구가 아닌 개인 고소

인이 서면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결정이나 행위가 다른 교인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적·개인적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며, 이는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된다.

- e. 교단 사역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면 고소를 제기하는 직원은 해당 결정이나 행위가 자신의 직원 지위에 있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적·개인적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며, 청문회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
- f. 피소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결기구가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가 피소인에게 통지되었고 출석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하면, 피소인의 부재 중에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 g.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은 사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의결기구가 최종 심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h. 모든 사건의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의결기구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사건 전체를 듣지 못한 구성원은, 투표 전에 기록을 읽거나 청취하지 않는 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 i. 증언, 증거물, 문서, 기타 모든 증거와 결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절차의 기록은 의장이 인증해야 하며, 이는 상소 절차의 근거가 된다. 당사자들은 그 기록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섹션 6: 상소

- a. 상소는 해당 의결기구의 상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b. 상소의 근거에는 하위 의결기구의 절차상 결함, 증거의 채택 또는 배제에 관한 결정, 사건에 대한 편견 또는 편향, 판결의 명백한 부당함, 성경·신앙고백·교회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 등이 포함되며, 상소는 청문회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한다.
- c. 청문회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 절차가 명백하게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증거가 해당 결정을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았거나, 성경·신앙고백·교회헌법이 잘못 해석되거나 적용된 경우.
- d. 상소를 심리하는 의결기구는 청문회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신빙성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 e. 하위 의결기구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총회 상소 그리고 재판

국 규정이 적용된 경우 총회의 이사회·사역기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모두 재판국에 회부된다.

- f.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결기구에서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안의 상소 심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한교회 사역부 절차에 관련된 의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상소의 경우, 안전한교회 자문단 조사과정(Safe Church panel process)에 참여한 자는 상소 심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g. 청문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섹션 7: 카운실 청문회 이후 노회에 상소하는 절차

- a. 안전한교회 사역부 절차의 결정을 포함하여, 청문회 후 카운실의 결정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기록이 인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소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상소장을 노회 행정총무에게 제출할 수 있다. 상소장의 사본은 상대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대리인, 그리고 해당 사건을 결정한 카운실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소장을 접수한 카운실 서기는 인증된 기록을 즉시 노회로 이송해야 한다. 상소가 안전한교회 사역부 절차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자문단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이 상소 기록으로 사용된다.
- b. 노회에서의 상소 심리는 상소장이 제시한 상소 이유에 한하여 진행된다.
- c. 패소한 당사자는 상소장과 함께 상소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소 이유를 지지하는 확정된 기록의 해당 부분들과 기타 근거 자료는 명확하게 인용되어야 한다. 서면 진술서의 사본은 상대 당사자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노회의 허락이 없는 한, 서면 진술서는 두 줄 간격 기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d. 상대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상소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노회 행정총무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록의 해당 부분과 답변을 지지하는 기타 근거 자료를 인용한 서면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와 서면 진술서의 사본은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노회의 허락이 없는 한, 서면 진술서는 두 줄 간격 기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e. 상소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기구가 그 상소의 결정이 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소인의 대리인이 상소 결정을 내려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의결기구는 상소를 계속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f. 노회는 상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소 90일 이후, 최대 180일 이내에 상소 심리 일정을 정해야 하며, 청문회의 일시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 g. 상소 심리에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노회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가진다. 패소한 당사자가 먼저 발언하며, 승소한 당사자가 노회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후 패소한 당사자는 답변을 위해 시간을 남겨둘 수 있다. 노회의 허락이 없는 한, 각 당사자의 구두 발표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된다.

- h. 양 당사자의 발표가 종료된 후, 노회는 내부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 기록을 검토하고 즉시 해당 사안의 쟁점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적법하게 구성된 노회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 i. 노회는 카운실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확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으며, 또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 재청문을 실시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카운실로 환송할 수 있다. 카운실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반복하는 노회의 결정은 그 수정 또는 반복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서면 결정은 상소 심리가 열린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늦어도 45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j. 서면 결정이 발송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상소는 노회에 상소를 제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섹션 8: 총회 재판국

- a. 총회에서 진행되는 최초 청문회와 상소 청문회는 총회가 임명한 재판국에 회부된다. 재판국은 필요에 따라 총회와 총회 사이에 소집되며, 그 권고안을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총회 규정에는 이 재판국에 관한 일부 별도 규정이 있으나, 재판국은 기본적으로 총회의 일반 분과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 B. 재판국(Judicial Code Committee)은 12명으로 구성되며, 교단 내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위원의 최소 25%가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남녀가 동수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매년 4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4명 중 적어도 1명은 말씀사역자 또는 위탁목사여야 하며, 적어도 1명은 법률을 전공한 자여야 하고, 적어도 1명은 말씀사역자·위탁목사 또는 법률 전공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위원은 CRC 대의위원회가 제출한 추천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 대의위원회에 추천인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후 그해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의위원회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은 재선될 수 있으나, 연속하여 6년 이상 봉사할 수 없다. 2년 이상 재판국에서 떠나 있었던 전 위원은 신규 위원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재판국은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보고서를 작성할 보고자를 선출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재판국 의장의 절차 자문으로 참여한다. 특정 총회에서 재판국에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은 그 총회의 총대일 수도 있고, 총대가 아니어도 된다.

## 섹션 9: 총회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때의 청문회 및 상소 절차

- a. 총회에 접수된 서면 고소장은 CRC 사무총장에 의해 재판국으로 회부되며, 재판국은 그 규정(Judicial Code)에 따라 최초 청문회를 실시한다.
- b. 노회 청문회 이후 내려진 노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장도 CRC 사무총장에 의해 재판국으로 회부되며, 재판국은 그 규정에 따라 상소 청문회를 실시한다.
- c. 총회의 사역기관·이사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서면 고소장과 총회가 처리해야 하는 기타 정식 재판 대상 사안들도 CRC 사무총장에 의해 재판국으로 회부되며, 재판국은 그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한다.
- d. 노회에서의 상소 심리 이후 총회에 제출된 상소장 역시 CRC 사무총장에 의해 재판국으로 회부된다. 재판국은 해당 상소장을 검토하여, 추가 심의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대의위원회에 권고한다. 대의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추가 상소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국은 그 규정에 따라 상소 청문회를 실시한다.
- e. 재판국은 진상조사와 권고사항 및 그 근거를 서면으로 총회에 제출하며, 이 보고서는 총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이 서면 보고서에는 상소 당사자들의 이름은 포함하되, 이름 공개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이 보고서는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다루어질 시점에 총대들에게 제공되며, 총대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필요한 비밀 유지의 정도에 따라, 재판국은 총회 임원들에게 총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1~2일 전에 보고서를 총대들에게 배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과 피소인은 정규 업무일 기준, 총회 개회 10일 전 이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 안에 사무총장실에서 발송하는 서면 보고서를 수령하게 된다. 서면 보고서를 받은 고소인과 피소인은 각자의 대리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그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 f. 고소인과 피소인은 서면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총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국은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는지(교회헌법 보칙 제30조 c항, 섹션 2-g)와 해당 발언이 총회에 제공할 유익을 근거로 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총회 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한다(요청을 한 당사자가 한 명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g. 재판국은 재판국 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총회 임원들에게 적절한 서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h. 총회는 재판 사안을 다음의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 i) 해당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
  - ii) 총회의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 또는 화해를 도모하는 방식
  - iii) 해당 노회나 카운실에 권고와 함께 반송하는 방식
  - iv) 총회가 자체적으로 원심 청문회 또는 상소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식
- i. 총회가 자체적으로 원심 청문회 또는 상소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총회는 재판국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존중한다.
- j. 총회가 자체적으로 원심 청문회 또는 상소 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총회는 본 규정에 명시된 재판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

(1977 총회록, pp. 48-54)

(1993 총회에서 개정, p. 499)

(1996 총회에서 개정, pp. 484-88)

(2003 총회에서 개정, pp. 688-91)

(2013 총회에서 개정, p. 549)

(2014 총회에서 개정, p. 569)

(2015 총회에서 개정, p. 627)

(2019 총회에서 개정, pp. 717-18)

(2024 총회에서 개정, pp. 914-26)

### 제31조

결정에 대한 변경 요청은 해당 결정을 내린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그러한 요청은 다시 고려할 충분하고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때 인정된다.

-보칙 제31조 참조

### 보칙 제31조

총회는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변경 요청이 상위 의결기구에 제출되기 전에 가능한 한 하위 의결기구에서 먼저 처리되도록 교회들에게 권고했다.

(1983 총회록, pp. 653-54)

### 제32조

- a. 모든 의결기구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다.
- b. 모든 회의에는 의장을 둔다. 의장의 직무는 다루어질 안건을 명확히 진술하고 설명하며, 교회헌법의 규정이 준수되는지 살피고, 모든 발언이 합당한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서기를 두어 회의 진행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게 한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는 이러한 직분들이 회의가 폐회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 c. 각 의결기구는 문서 접수, 안전·회의록 작성, 서류·기록 보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 d. 각 의결기구는 적법한 법인 단체 설립을 통해 그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32조 d항 참조

### 보칙 제32조 d항

#### A. 미국 소재 교회를 위한 법인 설립 모범 정관

### 교회 정관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기 원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정관을 채택한다.

### 제1조 단체의 이름

본 법인(교회)의 이름은 \_\_\_\_\_이다.

### 제2조 위치

교회의 위치는 \_\_\_\_\_ 시, \_\_\_\_\_ 카운티, \_\_\_\_\_ 주(州)에 있다. 교회의 주소(도로명 주소 및 우편 주소)는 \_\_\_\_\_이다. 등록된 사무실의 상주 대리인의 성명은 \_\_\_\_\_이다.

### 제3조 기본 원칙

본 교회는 북미주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소속으로, 다음 사항들을 교리와 교회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한다.

(a)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 (b) 본 교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공통 신앙고백, 즉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돌트 신경, 그리고 북미주 개혁신교회 총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이나 추가사항을 따른다.

#### 제4조 목적

본 교회는 1986년에 제정된 미연방 세법 제501(c)(3)조 및 그 개정 조항(또는 장차 제정될 동등한 조항)에 따라, 순전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교회법인이다.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a) 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 면제 자격을 가진 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
- (b) 세법 제170(c)(2)조에 따라 기부금 공제 자격을 가진 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활동

본 교회는 영리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였다. 교회의 재산, 수입 또는 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교인, 카운실 구성원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본 교회는 제공된 사역과 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의 지출과 분배를 할 수 있다.

본 교회의 주요 활동 중 상당 부분이 선전 활동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출판물 발행 및 배포를 포함한다).

#### 제5조 교회 운영

교회의 운영은 총회가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교회헌법(이하 “교회헌법”)에 따라 시행한다. 본 교회의 카운실은 교회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며, 교회헌법과 관계 주(州)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의 제반 재정 및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교회헌법에 따라 선출되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목사(들)가 있을 경우, 그들은 모두 이 교회의 교인이어야 한다. 직분에 부여된 법인상의 권한은 그 직분을 사임하거나 면직함과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목사직의 공석은 교회나 이사회의 존속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 재산

##### A. 재산의 보유 및 관리 방식

본 정관 제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회원 교회로서 본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또한, 본 정관 제3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교리 원칙과 교회 운영 체제를 준수하고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해석(단, 교회헌법에 따라 총회의 상소 심의를 거칠 수 있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B. 교회 해산 시

본 교회가 해산되고 법인이 해산될 경우, 교회의 채무와 경비를 모두 정산한 후 잔여 자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자산을 교회 이사회의 제안과 교인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대로 양도한다. 이러한 처분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노회가 교회의 해산과 법인의 해산을 승인해야 한다.
2. 교회 이사회는 재산 분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노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교인들의 투표는 본 정관 제7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잔여 재산은 미연방 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가진 하나 이상의 기관에만 분배되어야 한다.

##### C. 합의에 의한 교회의 분립

본 교회의 교인 과반수가 합의하여, 노회의 동의를 얻어 본 교회를 두 개 이상의 북미주 개혁신교회 소속 교회로 분립하기로 한 경우, 본 법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본 정관 제7조 B항의 규정에 따라, 교인총회의 과반수 찬성 결의로 정해진 바에 따라 분배한다.

##### D. 합의되지 못한 교회의 분립

노회가, 또는 상소한 경우 총회가, 본 교회 내에 화해할 수 없는 분열이 발생했다고 판정할 경우, 노회(또는 상소한 경우 총회)는 고유한 판단에 따라,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회원 교회로서의 목적과 본 정관 제3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교리와 교회 제도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인정되는 입교교인을 본 교회의 적법한 회중으로 간주하며, 이들이 본 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보유하고 향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본 정관 제6조의 어떠한 규정도, 노회(또는 상소의 경우 총회)가 고린도전서 6장의 성경적 권면에 따라 본 교회의 입교 교인들 가운데 두 개 이상의 그룹을 각각 적법한 회중으로 판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각 그룹 간에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회(또는 상소의 경우 총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와의 교회적 교류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 그룹 또는 복수의 그룹 간에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을 분할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

한 결정을 내릴 전권적 재량권을 가진다.

### 제7조

#### 특정 사항에 대한 교인의 투표 요건

A. 본 정관 제7조 B항부터 D항까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 이사회는 교회에 속한 부동산을 교섭, 매각, 양도, 저당, 임대 또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교회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예배당, 사택,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을 건립하거나 수리할 권한을 가지며, 교회 직원의 사례비 및 보수를 책정할 권한을 가진다.

B. 본 정관 제7조 A항에 따른 부동산의 매입, 매각, 양도, 저당, 임대 또는 사례비 책정은 교인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출석 교인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사전에 얻지 아니하고는 시행될 수 없다. 이 회의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예배 장소에서 연속 두 주일에 걸쳐 소집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C. 교회가 합의없이 분리될 경우, 부동산 및 동산의 처분은 본 정관 제6조 D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어떠한 증여, 기부, 기탁, 양도 또는 유증이라 할지라도, 그 명시된 조건이나 분명한 의도에 배치되는 매각, 저당 또는 양도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 개정

교회 이사회는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얻어서 언제든지 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III조부터 제VIII조까지의 규정에 상충되는 개정안은 노회 또는 상소일 경우 총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채택할 수 없다.

이러한 정관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교인총회에서 얻어야 한다. 해당 교인총회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소집되어야 하며, 본 정관 제VII조 B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공고되어야 한다.

### 제9조

#### 책임의 한정

교회의 자원봉사 이사의 책임은, 교회가 설립된 주(州)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면제되거나 인수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한, 면제 또는 인수는 미연방 세법 제501(c)(3)조에 규정된 교회의 비영리 면세 지위와 상충하거나, 세법 제4958조에 따른 과세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는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본 교회의 이사 또는 직원의 행위나 누락,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이나 주장된 책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 기간

본 법인의 존속 기간은 영구적이다. 이에 우리는 본 정관에 서명함으로써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증명한다.

[주법에 따라서 서명이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2009 총회록, p. 596)

주 1: 상기 모범 정관은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 검색창에서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주 2: 상기 정관을 미시간주 법인에 적용한 양식은 교단 사무총장실 또는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받을 수 있다.

#### B. 캐나다 내 교회를 위한 법인 설립 모범 정관

##### 1. 법인의 이름

\* Christian Reformed Church

##### 2. 등록된 사무실이 위치한 주

##### 3. 이사의 최소 및 최대 인원수

(고정된 인원으로 정하는 경우, 두 칸 모두에 동일한 수를 기입할 것)

최대 \_\_\_\_\_ 최소 \_\_\_\_\_

##### 4. 법인의 목적

본 법인의 목적은 북미주 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그 실천과 삶을 가르치고 권장하는 것이다.

##### 5. 본 법인의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있는 경우)

a) 본 법인은 회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본 법인이 얻는 모든 수익 또는 증가분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b) 본 법인은 「Charities Accounting Act(자선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6. 본 법인에 속한 그룹과 단체

본 법인은 소속 회원을 오직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인정한다. 각 회원은 법인의 모든 회원총회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및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7.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

본 법인을 청산, 해산 또는 정리할 때,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본 법인이 소속된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노회가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 248(1)조에 따른 합당한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노회에 귀속한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 법인의 소재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소속 교회가 위 법조항에 따른 합당한 수혜자일 때, 그 교회에 귀속한다.

위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anada Corporation이 위 법조항에 따른 합당한 수혜자일 때, 그 단체에 귀속한다.

위 세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 이상의 합당한 수혜자에게 「소득세법」 제248(1)조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한다.

## 8. 기타 규정(해당되는 경우)

a. 교회의 이사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합리적인 경비는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들은 그 직분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다.

b. 본 법인의 차입 권한은 「캐나다 비영리법인법(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에 따라 제정·승인된 내부 규정에 의거하며, 통상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 차입으로 한정된다. 단, 본 법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 권한은 이와 같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c. 「자선회계법(Charities Accounting Act)」의 규정을 본 법인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공공후견인 및 수탁인의 보고에 근거하여 장관(Minister)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캐나다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부총독(Lieutenant Governor)이 법인의 설립 인가서를 취소하고 법인을 해산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d. 본 법인의 기금은 「신탁법(Trustee Act)」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e.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목적을 위해, 본 법인은 「캐나다

비영리법인법」의 규정, 또는 수시로 적용되는 기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은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설립 인가서, 관련 법령 또는 자선단체에 관한 일반법이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서 행사될 수 없다.

f. 교회의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선임된 이사의 총 인원은 직전 연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다음 연례 회원총회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9. 선언

본인은 본 법인의 발기인임을 이에 증명합니다.

| 성명    | 서명    |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 _____ | _____ |

주: 교회는 본 정관을 채택하기 전에, 특히 법인 설립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 문서는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모든 캐나다 내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캐나다 비영리법인법」을 서식으로 사용했다. 본 문서는 온타리오주 소재 CRC 교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각 교회는 소재한 주(州)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CRC 교회가 어떤 법인 설립 관할권을 선택할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온타리오주의 CRC 교회는 CNCA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CNCA가 당연직 이사(ex-officio directors)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온타리오주의 새로운 관련 법은 이를 인정함). 또한 CNCA가 종교법인에 대한 확대된 회원 구제 조항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온타리오주의 유사 법령에는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부 종교단체들은 온타리오주 법률이 보다 안전한 선택지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2012 총회록, p. 730)

주: 상기 모범 정관은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 검색창에서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 C. 캐나다 소재 교회의 재산 운영에 관한 내규

a. 본 법인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본 교회의 설립 인가서 또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그리고 본 법인의 교리 및 교회 정치의 근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신탁 형태로 보유한다. 해당 해석은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담당하며, 상소가 제기될 경우

북미주 개혁교회의 총회가 이를 재심할 수 있다.

- b. 노회의 동의를 얻어 본 교회를 해산하고 법인을 해체할 경우, 모든 채무와 경비를 변제한 후에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캐나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캐나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가진 자선단체 중,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하나 이상의 단체에만 분배한다. 이러한 분배는 카운실이 노회와 협의하여 제안하고, 교인총회에서 출석 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c. 교인총회의 투표에 따라 노회의 동의를 얻어 본 교회를 둘 이상의 북미주 개혁교회로 합의 분립할 경우, 본 법인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은 교인들의 합의에 따라 각 교회 간에 분배한다. 다만, 그 분배 내용은 노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소가 제기될 경우 총회의 재심을 받을 수 있다.
- d. 노회가 또는 상소인 경우 총회가, 본 교회 내에 화해할 수 없는 분열이 발생했다고 판정할 경우, 노회(또는 상소일 경우 총회)는 고유한 판단에 따라, 본 교회의 설립 인가서 또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그리고 교리와 교회 정치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인정되는 입교교인을 본 교회의 적법한 회중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본 법인의 유일한 회원이 되며, 본 교회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단독적 소유 및 향유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 \_\_\_\_조의 어떠한 규정도, 노회(또는 상소의 경우 총회)가 고린도전서 6장의 성경적 권면에 따라, 본 교회의 입교교인들 중 둘 이상의 그룹을 각각 적법한 회중으로 판정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본 교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해당 회중(들) 사이에 동산과 부동산을 적절한 비율로 분할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997 총회록, p. 620)

#### D. 캐나다 소재 교회를 위한 일반 운영 모범 내규 제1호

캐나다 소재 교회를 위한 모범 일반 내규가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모범 내규의 사본은 교단 사무총장실이나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 검색창에서 “Bylaw Canada”를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제33조

- a. 의결기구는 그 결정의 집행이나 향후 심의를 위한 보고서 준비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각 위원회에는 명확히 규정된 임무를 부여해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해 정기적이고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b. 각 노회는 운영위원회(classical interim committee)를 임명하고, 총회는 대의원회

(Council of Delegates)를 임명하여, 각 의결기구가 정기 회의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안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임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그들이 처리한 사안들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상위 의결기구는 하위 의결기구에서 파송된 직분자 총대들로 구성된다. 하위 의결기구는 총대에게 적절한 위임장을 부여하여, 상위 의결기구에 상정된 사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준다. 다만 총대는 자신이나 소속 교회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다.

### B. 카운실

#### 제35조

- a. 각 교회에는 목사(들), 장로들과 집사들로 구성된 카운실을 둔다. 카운실은 교회의 공동 사역과 일반 운영에 속하는 사안을 책임지며, 그 예로는 교회의 사명 증진, 목사 청빙, 직분자 후보 승인, 상호 직무 점검, 노회의 교회방문단과의 회의 그리고 기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포함된다.

-보칙 제35조 a항 참조

- b. 각 교회에는 목사(들)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둔다. 당회는 장로 직분에 고유하게 속한 사역을 책임지며, 그 사역의 결과를 카운실에 보고한다.
- c. 각 교회에는 집사들로 구성된 집사회를 둔다. 집사회는 집사 직분에 고유하게 속한 사역을 책임지며, 그 사역의 결과를 카운실에 보고한다.

#### 보칙 제35조 a항

카운실은 노회와 교단에 보낼 현금을 포함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기 위한 교회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1992 총회록, p. 711)

(2020 대의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p. 464)

### 제36조

- a. 카운실, 당회 그리고 집사회는 회중에게 미리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인다. 각 회의체는 자신들의 의장과 기타 임원들을 직접 선출한다.
- b. 카운실은 적어도 일 년에 네 번, 서로의 직무 수행을 살피고 권면하는 상호 점검을 실시한다.

### 제37조

카운실은 직분자 선출 시 회중의 협력을 구할 뿐 아니라, 회중의 감독과 징계를 제외한 교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위해 카운실은 적어도 연 1 회,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교인들로 구성된 교인총회를 소집한다. 교인총회는 카운실이 주관하며, 카운실이 제출한 안건만 심의한다. 교인총회에서 제시된 회중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되, 법인 정관이나 내규가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결정 및 집행 권한은 교회의 운영기관인 카운실에 있다.

-제59조 b, c항 참조

### 제38조

- a. 아직 카운실을 조직할 수 없는 교회는 노회가 지정한 인근 교회의 카운실의 돌봄을 받는다.
- b. 카운실을 처음으로 조직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칙 제38조 b항 참조

- c. 타 교단에 속한 교회가, 그 목회자와 사역자의 전입을 포함하여, CRC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칙 제38조 c항 참조

- d. 카운실과 교회가 해산하거나 미조직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산의 분배가 필요하다면, 교회와 카운실이 노회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보칙 제38조 d항 참조

- e. 두 개 이상의 카운실과 교회가 합병하기로 결정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f. 카운실이 CRC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할 경우, 총회가 채택한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보칙 제8조 f항 참조

- g. CRC 교단의 교회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 교류관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교단 교회와 합병하여 연합교회를 이룰 수 있다.

-보칙 제38조 g항 참조

- h. CRC 교단의 교회는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교류관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교단에 소속될 수 있다.

-보칙 제38조 h항

#### 보칙 제38조 b항

- a. 통상적으로 최소 3년 이상 존속한 교회여야 한다.
- b. 교회는 직분에 합당한 성경적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인격적·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충분한 수의 교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c. 교회는 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성을 위해 재정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 직교회가 되기 전에 사례비와 노회 및 교단 재정 후원을 포함한 재정 자립 능력과 헌 신도를 보여주는 재무 자료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 d.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는 사역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기회를 통해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5 총회록, pp. 762-63)

(2020 대의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p. 464)

#### 보칙 제38조 c항

2016년 총회는 CRC 교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교회를 위한 수정된 가입 절차와 과정을 승인했다. 이러한 가입 절차와 과정을 담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의 “교단 가입절차”는 총회 대리인 활동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노회의 행정총무에게 전달되었다.

(2006 총회 안건집, pp.64-70,

2006 총회록, p. 680;

2016 총회록에서 채택, p. 845)

#### 보칙 제38조 d항

교회에서 활동하는 입교교인 수가 45명 이하로 줄어들었거나, 지도력을 감당할 교인의 수가 부족하거나,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거나, 향후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노회는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한 지표로 보고 해당 교회와 함께 조직교회 지위 유지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5 총회록, p. 763)

#### 보칙 제38조 f항

지역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a. 교회 카운실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면, 통상적으로 차기 노회 정기 회의에서 이 사실을 통보한다. 카운실은 탈퇴 의사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b. 노회는 해당 결의를 재고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표들을 임명하여 카운실과 만나도록 한다. 노회 대표들은 카운실과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카운실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 서면 반박문을 제시해야 한다. 카운실과 노회 대표들 간의 회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c. 노회 대표들이 카운실을 설득할 수 없고 카운실이 탈퇴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 카운실은 교인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카운실은 이 교인총회에서 탈퇴에 대한 서면 근거와 노회 대표들의 서면 반박문을 교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d. 노회 대표들은 해당 교회의 탈퇴 안건이 논의될 교인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 받아야 하며, 교인총회에서 회중에게 교단에 남을 것을 설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e. 교인총회에서 토론 후 예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과반수가 탈퇴를 지지할 경우, 이 결의를 재확인하는 제2차 교인총회를 최소 한 달 이후, 최대 1년 이내에 소집하도록 일정을 정한다.
- f. 제2차 교인총회에서도 탈퇴가 가결되고 카운실이 탈퇴 수순을 진행할 경우, 노회는 교단에 남기 원하는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
- g. 교회가 교단 탈퇴를 희망할 경우, 노회(상소 시 총회)는 교회 내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노회(상소 시 총회)가 해당 교회의 탈퇴 결의를 수락한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탈퇴가 완료된다.

(1997 총회록, pp. 613-14)

#### 보칙 제38조 g항

##### 연합교회를 세우는 규정

1. 다음은 연합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이 따라야 할 절차이다.

- a. \_\_\_\_\_ 소재 \_\_\_\_\_ 교회는 다음의 연합 계획을 채택하며, 본 계획은 각 교회가 정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고와 정족수를 갖추어 정식으로 소집된 교인총회에서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각 교회가 소속된 노회(지방회)가 해당 연합과 본 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b. 이 교회 연합의 목적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며, 선교 및 구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연합교회는 각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과 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목회자(들)의 사역을 함께 지원한다.
- c. 연합교회의 명칭은 \_\_\_\_\_로 한다.
- d. 연합교회는 r, s, u, v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교회의 내규의 구속을 받는다.
- e. 연합교회의 카운실(당회)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각 상위 의결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f. 연합교회의 교인 구성은 연합하는 각 교회의 기존 교인들과 연합교회 카운실(당회)이 수용한 교인들로 구성된다.
- g. 연합교회의 카운실(당회)은 총 교인 수를 각 상위 의결기구에 동등한 비율로 보고해야 하며, 이 교인 수는 연합교회가 제출한 보고임을 명시하고, 실제 총 교인 수와 함께 총회(대회)의 회의록·의사록·명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카운실(당회)은 교회의 주요한 추가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각 상위 의결기구는 이를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 h. 연합하는 교회들의 기존 직분자들(장로와 집사)이 연합교회의 직분자로 사역하며, d, r, s, u, v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교회의 내규가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 i. 연합이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교인총회에서, 연합교회는 위 h항에 명시된 기존 임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며, 이는 아래 v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
- j. 연합하는 교회들의 목회자와의 관계는 노회(지방회)가 본 연합 계획을 승인하는 즉시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이 목회자들은 연합교회 교인총회의 선출에 따라 연합교회의 목회자(사역자)로 시무할 수 있다.
- k. 연합교회의 목사(들)는 해당 교회가 속한 직할 상위 의결기구의 정회원이 되며, 아래 s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 i. 연합교회는 해당 주의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 법인의 정관에는 위 b, c, d항의 주요 내용과 연합하는 교회들의 표준 신앙고백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m. 연합하는 교회들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위 i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전된다. 새 법인은 연합하는 교회들의 법적 승계자가 되어, 수탁 재산이나 기금을 인수

한 경우에는 최초 신탁 설립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들의 모든 채무는 연합교회의 채무로 간주된다. 교회 법인의 설립이 금지된 주나 도에서는 본 조항의 목적이 해당 지역의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 n. 법인(또는 비법인 단체)의 이사들은 민법에 부합하도록, 위 d항에 규정된 헌법 조항과 아래 v항의 해석에 따라 선출된다.
- o. 연합교회의 카운실(당회)은 헌금자가 헌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기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매년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역 또는 구제사역에 공평하게 배분될 일반 선교 및 구제 계획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 그 배분 비율은 상위 의결기구의 요청에 따라 카운실(당회)이 결정한다.
- p. 연합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된 노회(지방회)와 총회(대회)에 대한 지원금은 연합교회의 전체 입교교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교단들에 균등하게 분배해 납부한다.
- q. 연합교회의 교인들은 장로들(당회)의 권징을 따르며, 그 권징은 각 교단의 헌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한 교단의 헌법이 의무 규정이고 다른 교단의 헌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 따라, 헌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장로들(당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r. 카운실(당회)의 조치에 상소할 경우, 교인은 한 의결기구(노회 또는 지방회 등)에만 제기하며, 이후의 모든 추가 상소 또는 항의도 처음에 선택한 그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카운실(당회)과 해당 교인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 s. 목사(들)는 카운실/노회/지방회의 감독을 받으며, 어느 한 의결기구가 권징 절차를 개시할 경우, 다른 교단의 의결기구로부터 위원회를 초청해 기소의 작성과 추진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다. 상소 시에는 권징을 시작한 교단의 가장 상위 의결기구가 최종적으로 판결하며, 그 판결은 카운실/노회/지방회 모두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t. 목사(들)는 연합교회가 속한 교단들 중 한 교단의 은퇴연금제도에 가입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 해당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한 교단의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u. 카운실(당회)이 취한 조치에 대해 항의나 불만을 제기할 경우, 교인은 오직 한 교단의 헌법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일단 한 의결기구에 해당 사안을 제출하면, 다른 교단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v. 각 교단의 헌법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한 교단의 규정이 의무사항이고 다른 교단의 규정이 임의사항이면,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두 교단의 의무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위 q항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 연합교회의 카운실(당회)은 직접

관할권을 가진 의결기구에 청원하여, 각 교단의 최상위 의결기구의 해석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그 충돌을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 w. 연합교회는 1년 이상 2년 이내에 두 차례의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각각에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관련된 노회(지역회)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될 경우,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관할 노회(지역회)들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2. 본 문서의 어떠한 조항도, 본 조항에 따라 조직된 연합교회, 그 교인, 직분자 또는 목회자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교회의 교회헌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 이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1998 총회록, p. 379)

(2020 대의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p. 464)

### 보칙 제38조 h항

본 교단과 교류관계에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는 아래의 가입 절차를 따른다.

- a. 다음의 계획은 \_\_\_\_\_ 소재 CRC 교회가 정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교인총회에서 내규가 요구하는 공고와 정족수를 갖추어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해당 CRC 교회의 노회와 추가 교단의 지역 의결기구가 이 가입 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b. 이 가입의 목적은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들에 가입하려는 해당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며, 선교 및 구제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c. 이 두 교단이나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하는 교회의 이름은 \_\_\_\_\_ 교회이다.
- d.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하는 해당 교회는 아래 m, n, p, q항의 규정에 따라 각 교단의 교회헌법을 적용받는다.
- e. 카운실은 각 교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출석하는 성도의 수와 기타 통계자료를 해당 교단에 보고해야 한다.
- f. 조직교회인 경우, 가입 시점에 사역 중인 직분자들(장로와 집사)이 초창기 직분자로서 계속 섬기며, 위 d항과 아래 m, n, p, q항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수행한다.
- g. 조직교회가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이후, 또는 미조직교회가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하는 조직교회로 전환할 때에는 해당 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한다.

- h. 가입된 교회의 목사(들)는 각 교단의 직할 의결기구에서 정식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며, 아래 n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 i.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교회는 b, c, d항에 규정된 내용과 해당 교단들의 신앙고백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한다.
- j.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카운실은 헌금자가 헌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기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매년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역 또는 구제 사역에 공평하게 배분될 일반 선교 및 구제 계획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 배분 비율은 상위 의결기구의 요청에 따라 카운실이 결정한다.
- k. 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된 노회와 총회(그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전체 입교교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관련 교단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각 노회와 총회에 납부한다.
- l. 교회의 성도들은 장로들의 권징을 받으며, 그 권징은 각 교단의 헌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한 교단의 헌법이 의무 규정이고 다른 교단의 헌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 따라, 두 교단의 헌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장로들의 선택에 따라 시행한다.
- m. 카운실의 조치에 대해 상소할 경우, 교인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의결기구(노회 등)에만 제출하며, 이어지는 상소 또는 항의도 처음 선택한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그 의결기구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카운실과 회중 모두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n. 목사(들)는 안수를 받은 교단의 카운실과 해당 교단의 의결기구의 권징을 받는다. 다만 어느 한 의결기구가 권징 절차를 개시할 경우, 다른 교단의 위원회를 초청하여 고소의 작성과 추진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다. 상소가 제기될 때에는, 권징 절차를 개시한 교단에서 상소를 접수하며, 그 교단의 최상위 의결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카운실과 노회 모두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o. 목사(들)는 안수를 받은 교단의 은퇴연금제도에 가입하며, 그 교단이 요구하는 규정을 따른다.
- p. 카운실의 결정에 대한 항의와 불만 제기는 당사자가 선택한 하나의 교단의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일단 한 교단의 의결기구에 해당 사안이 접수되면, 다른 교단은 동일한 사안을 관할하지 않는다.
- q. 가입 계획은 1년 이상 2년 이내에 두 차례의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관련 노회(지역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산할 수 있다.

가입을 해산할 경우,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그것의 구입 당시의 규정과 가입할 당시의 규정에 의해 분배한다. 분배에 관한 서면 규정이 없을 경우, 한 노회(지역 의결기구)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은 노회(지역 의결기구)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 r. 교단들의 헌법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한 교단의 규정이 의무사항이고 다른 교단의 규정이 임의사항이면,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의 의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위 i항에서 정한 경우 제외),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카운실은 직접 관할권을 가진 의결기구에 청원하여, 각 교단의 최상위 의결기구가 권위 있는 해석 또는 교회헌법 개정을 통해 그 충돌을 해결하도록 요청한다.
- s. 본 문서의 어떠한 조항도, 본 조항에 따라 조직된 두 교단 또는 다수의 교단에 가입한 교회, 그 교인, 직분자 또는 목회자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교회의 교회헌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있어 이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015 총회록, pp. 648-49)

(2020 대의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p. 464)

(2022 총회에서 개정, p. 937)

## C. 노회

### 제39조

노회는 한 지역 안의 CRC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조직된 공동체이다. 또한 노회는 서로에게 지원과 책무를 제공하고, 지역 안에서 맡겨진 공동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모색하며, 교단 전체와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노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교회들로 구성된다.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거나 기존 노회의 구역을 재조정하는 일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칙 제39조 참조

### 보칙 제39조

노회는 회계를 통해 노회 및 교단 기금의 수령과 지출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가 필요를 가진 교회를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992 총회록, p. 711)

교회가 다른 노회로의 이전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한 지리적 요인 외의 근거도 제시할 수 있다. 총회는 이러한 근거들을 고려하여 해당 요청을 처리할 재량을 가진다.

(1996 총회록, pp. 561)

#### 제40조

a. 각 교회의 카운실은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을 노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한다. 교회에 목사가 공석이거나 목사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목사 대신 다른 장로를 대의원으로 파송한다. 대의원으로 파송되지 않은 직분자도 노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문 발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보칙 제40조 a항

b. 노회는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없는 한 최소 매 4개월마다 모인다.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직전 노회에서 결정한다.

-보칙 제40조 b항

c. 노회의 의장은 목사들이 순번제로 하든지, 총대 중에서 의장을 선출함으로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의장이 두 번 연속하여 선출되지 않는다.

-보칙 제40조 a, c항

#### 보칙 제40조 a항

a. 거리가 멀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교회가 세 명의 대의원을 노회에 파송하기 어려운 경우, 카운실은 두 명의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b. 노회 파송 대의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헌법 보칙 제3조 a항에 관한 노회의 결정에 따른다. 여성 대의원의 참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대의원은 적절한 신임장에 자신의 항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들의 이름과 항의를 노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c. 노회가 원할 경우, 교회 카운실에 요청하여 그들이 감독하는 미조직교회로부터 최대 3명의 직분자를 노회에 파송하도록 할 수 있다.

d. 노회가 원할 경우, 교회 카운실에 요청하여 그들이 감독하는 안수받은 직분자인 캠퍼스 사역자를 노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하도록 할 수 있다.

(1997 총회록, p. 621)

(2007 총회에서 개정, pp. 595, 612)

(2009 총회에서 개정, p. 613)

(2015 총회에서 개정, p. 657)

(2022 총회에서 개정, pp. 847-48)

#### 보칙 제40조 b항

총회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노회의 모든 결정은, 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서 파송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내려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임시 노회가 필요한 경우, 총회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결정된다. 임시 노회는 소속 교회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정족수는 소속 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000 총회록, p. 668)

#### 보칙 제40조 a, c항

#### 레드 메사 노회 소속 교회를 위한 조정안

a. 각 교회의 카운실은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을 노회에 대의원으로 파송한다. 교회에 목사가 공석이거나 목사·장로·집사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세 직분자 가운데 어떠한 조합이든지 대의원 3명을 파송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으로 파송되지 않은 직분자도 노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문 발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c. 노회의 의장은 노회 소속 직분자 중에서 선출한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의장이 두 번 연속하여 선출되지 않는다.

(1981 총회록, p. 16)

(2015 총회에서 개정, p. 657)

#### 제41조

노회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각 회기에서 교회들의 자문 또는 협조 요청에 응답할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매년 최소 한 차례의 모임에서, 교단 내 교회들의 삶과 사역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회적 사안 한 가지 이상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 보칙 제41조

총회는 노회 신임장(classical credential) 양식의 상단 부분에 다음 문장을 추가하여 이를 수정했다.

우리는 우리 카운실이 CRC 교단의 교리적 표준을 충실히 따르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노회, 교단, 그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2006 총회록, p. 726)

#### 제42조

- a. 노회는 교회와 목사에게 자문할 사람을 지명한다. 노회는 매년 산하 교회를 방문할 교회방문단을 지명한다. 노회는 노회 카운슬러를 지명하여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 자문하도록 한다. 노회는 지역 자문목사를 지명하여 말씀사역자와 위탁목사를 지원한다.
- b. 교회방문단은 경험과 조언 능력을 갖춘 직분자들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팀으로 조직한다. 각 팀은 말씀사역자 1명과 최소 1명 이상의 다른 직분자를 포함한다. 그들의 임무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는지, 교회헌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교회는 이러한 권고가 도움이 될만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교회방문단을 초청할 수 있다. 교회방문단은 그들의 활동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보칙 제42조 b항 참조

- c. 노회 카운슬러의 직무는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가 교회 규정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카운슬러는 직분자, 통상적으로 말씀사역자로서, 청빙 과정을 진행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말씀사역자가 맡는다. 노회 카운슬러는 청빙 과정 중과 청빙 완료 후에 그 내용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d. 지역 자문목사(regional pastors)의 직무는 모든 목사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CRC에서 새롭게 안수받은 목사들이 멘토와 적절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칙 제42조 d항 참조

#### 보칙 제42조 b항

- a. 총회는 노회가 소속 교회의 영적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교회 방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도록 권면하며, 이를 위해 교회방문단 행동지침(Guide for Conducting Church Visiting,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서 확인 가능)과 Thrive에서 제공하는 기타 자료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b. 교회 지도자에 의한 학대 혐의가 교회 카운실에 제기될 경우, 카운실은 노회 운영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며, 운영위원회는 교회방문단을 임명하여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한다.
  - 1) 피신고자(accused)의 교회 카운실을 방문하여, 카운실이 해당 혐의를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절차(자문단 조사과정, 독립적 조사, 중재와 회복을 위한 대화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며 지원한다.
  - 2) 자문단 조사과정이 시행되면 참관인으로 자문단에 참여한다.
  - 3) 자문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응을 분별할 때 교회 카운실에 조언한다.
  - 4) 자문단 조사 진행 상황과 카운실의 대응에 대한 관찰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교회 카운실에 제출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와 그 대리인, 피신고자와 그 지원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보고서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카운실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노회에 제출될 수 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009 총회록, p. 596)

(2022 총회에서 개정, p. 851)

#### 보칙 제42조 d항

- a. 지역 자문목사는 특정한 임기로 임명된다.
- b. 지역 자문목사는 Thrive와의 협의를 통해 임명된다.
- c. 지역 자문목사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노회가 부담한다.
- d. 지역 자문목사는 매년 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Thrive에 사본을 제출한다.
- e. 자료 개발과 교육을 포함한 지역 자문목사 사역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감독은 Thrive가 담당한다.
- f. 지역 자문목사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안수받은 목사의 멘토 선정을 돕는다.
  - 1) 모든 목사 후보자는 안수와 함께 멘토와 연결된다. 새로 안수받은 목사는 사역의 첫

5년 동안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

2) 교회헌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14조 e항에 따라 CRC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모든 목사는 사역의 첫 5년간 의무적으로 멘토링을 받는다.

3) 멘토를 원하는 말씀사역자에게는 멘토가 제공된다.

(1982 총회록, p. 78;

2019 총회록에서 채택, p. 757)

#### 제43조

- a. 각 노회는 CRC 교회에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학생 장학금과 노회 영입위원회를 운영한다.
- b. 노회는 은사와 지식이 풍부하고, 헌신된 삶을 살며,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에게 노회 범위 내에서 설교하도록 인허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의 필요가 인정되면, 노회는 그들을 심사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설교자(exhorters)로 인허한다.

#### 제44조

- a. 노회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인접한 노회들과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
- b. 공동 관심사를 수행하는 노회들은 노회 차원의 의결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노회들로부터의 대의원 구성 방식과 회의 빈도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노회 차원의 의결기구의 권한, 영역과 임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의결기구는 그 임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D. 총회

#### 제45조

총회는 모든 노회에 속한 교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구이다.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 집사 1명과 또 다른 직분자 1명을 총대로 총회에 파송한다. 한 노회에서 동일한 직분의 총대를 2명 이상 파송할 수 없다.

-보칙 제45조 참조

#### 보칙 제 45조

##### a. 교단 재정 운영 기금

- 1) 총회는 교단 사역기관들의 연간 예산을 검토한다.
- 2) 매년 총회 후, 교단 직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교단 기금을 약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각 교회에 발송한다.

(1992 총회록에서 채택, p. 711)

(2020 교단 대의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p. 464)

##### b. 총회 총대와 총회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 1) 여성 총대(또는 총회 대리인)의 총회 참석(또는 선출)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믿는 총대는 총회 신임장에 자신의 항의를 기록할 수 있다. 해당 항의 내용은 총대의 이름과 함께 총회록에 기재된다.
- 2) 조직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위탁목사는 총회에 목사 총대로 파송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씀사역자가 맡는 교단 직무에도 추천될 수 있다.

(2007 총회록, pp. 612, 665)

(2009 총회에서 개정, pp. 613-14)

- 3) 미조직교회에서 사역하는 위탁목사나 부교역자는 총회에 장로 총대로 파송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로가 맡는 교단 직무에도 추천될 수 있다.

(2013 총회에서 개정, pp. 559-60)

#### 제46조

- a. 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그 개최 시기와 장소는 직전 총회에서 결정한다. 각 총회는 다음 총회를 소집할 교회를 지정한다.
- b. 총회 소집 교회는 CRC 교단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총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c. 총회의 임원은 총회 진행 규칙(Rules for Synodical Procedure)에 따라 선출되며 직무를 수행한다.

#### 제47조

총회의 직무에는 신앙고백, 교회헌법 그리고 예배의 원리와 요소를 채택하는 일이 포함된다. 총회는 예배에 사용될 예배문, 찬송가, 성경 번역본을 승인한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교회들이 그 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총회가 이를 시행할 수 없다.

-보칙 제47조 참조

#### 보칙 제47조

##### 교회헌법 제47조에 관한 규정

- a. 중대한 변경이란 신앙고백이나 교회헌법 조항의 근본적인 의미를 변경하거나, 채택된 예배의식서·찬송가·예배의 원리와 요소, 교회의 예배 규정 또는 지정된 성경 번역본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안에 관한 변경을 제안하는 위원회는 제안하는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그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b. 사전 기회란, 중대한 변경이 채택되기 전에 교회들과 노회들이 총회에 제안서나 기타 문서로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위원회 보고서의 경우, 해당 보고서가 총회 개회 전년도 11월 1일까지 접수되므로 교회들과 노회들은 이에 대해 사전 기회를 갖는다. 반면 상임위원회 보고서나 제안서의 경우, 총회 안전집이 총회 개회 두 달 전에 배부되며 이는 대부분의 노회가 총회 전에 갖는 마지막 회의가 끝난 지 한 달 후이므로, 교회들과 노회들은 일반적으로 사전 기회를 갖지 못한다.
- c. 교회와 노회가 중대한 변경안을 검토할 사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 안건은 차기 총회에 상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안건에 대한 총회의 최초 결정은 제안으로 간주되며, 차기 총회의 결정은 채택으로 간주된다.
  - 1) 제안된 변경안은 차기 총회에서 채택되기 전에는 시행될 수 없다. 또한 채택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총회 결의에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2) 제안된 변경안은 연구위원회의 권고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변경안을 제안한 총회는 차기 총회에 그 변경안을 설명할 대표(들)를 지정할 수 있다. 제안된 변경안과 그 대표는 총회 연구위원회의 권고와 그 대표가 갖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동일하게 가진다.
  - 3) 제안된 변경안이 차기 총회에서 기각될 경우, 그 변경안 또는 그와 유사한 안건은 총회가 다시 제안하지 않는 한 그다음 총회에서 채택될 수 없다.
- d. 교회헌법 보칙의 변경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5 총회록, pp. 755-56)

(1996 총회에서 개정, p. 500)

#### 제48조

- a. 노회들의 추천에 따라 총회는 각 노회에서 목사 1명씩을 총회 대리인으로 임명하며, 총회가 지정한 기간동안 사역하게 한다.

-보칙 제48조 a항 참조

- b. 교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총회 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접한 노회들에서 파송된 최소 3명의 총회 대리인이 참석해야 한다.
- c. 총회 대리인은 규정된 직무 외에도, 노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화합과 질서, 건전한 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d. 총회 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총회에 제출한다.

##### 보칙 제48조 a항

노회는 인접한 노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목사를 총회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남성 목사를 대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2007 총회록, p. 612)

#### 제49조

- a. 총회는 CRC 교단이 다른 교단들과의 교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 증진할 수 있도록, 다른 기독교 교회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교회들과의 연합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임명한다. 이러한 연합 사역은 총회가 승인한 CRC 에큐메니칼 현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 b. 총회는 CRC 교단이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교단들과 CRC 교단이 회원으로 속하거나 중요하게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기구들을 지정한다.

#### 제50조

- a. 총회는 CRC 교단이 다른 기독교 교단, 특히 개혁주의 관점을 공유하는 교단들과 협력하는 에큐메니칼 기구에 대표를 파송한다.
- b. 총회는 전 세계 교회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을 이러한 모임들에 제출할 수 있다.
- c. 교회 연합체들의 결정은 CRC 교단의 총회가 인준할 때에만 교단 내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 III. 교회의 임무와 사역

#### A. 예배

##### 제51조

- a. 교회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으며, 찬양과 기도에 참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보칙 제51조 a항 참조

- b. 각 노회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전략적 목회 계획에 예배·교육·기도·교제를 포함하도록 권면함으로써, 주일에 두 번째로 모이는 풍성한 전통을 지지하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

- c.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승천주일, 성령강림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통상적으로 송년·신년 예배, 교단 연례 기도일, 추수감사절에도 예배를 드린다.

- d. 교회나 국가, 혹은 세계에 중대한 어려움이나 복된 일이 있을 때 특별 예배를 선포할 수 있다.

##### 보칙 제51조 a항

- a. 총회는 주일에 두 차례 예배로 모이는 귀중한 전통을 지지하며, 기성 교회에는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하도록, 새로운 교회에는 이 전통을 수용하도록 권면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b. 교회가 두 번째 예배의 대안을 고려할 경우, 총회는 그 대안이 소속 노회에 충분히 책임을 지는 가운데 전략적 목회 계획 안에서 마련되도록 교회들에 권면한다.

(1995 총회록, pp. 766-67)

##### 제52조

- a. 당회는 예배를 관장한다.
- b. 당회는 예배문, 찬송가, 총회가 승인한 성경 번역본 사용 등 총회가 승인한 예배의 원리와 요소들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예배문을 수정하거나 시편·찬송·영가를 추가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은 총회의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

-보칙 제52조 b항 참조

##### 보칙 제52조 b항

- 총회가 예배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성경 번역본은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에 실려 있으며, 여기에는 King James Version (KJV),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TNIV),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그리고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등이 포함된다.
- 총회가 승인한 예배문, 찬송가, 예배 요소들은 교단의 최신판 찬송가(Psalter Hymnal, 현재 1987년판)에 수록되어 있다. 총회가 인준한 전례 양식과 그 수정본 그리고 기타 관련 자료들은 교단 웹사이트 [www.crcna.org](http://www.crcna.org)의 Synod Resources(총회 자료) 페이지에서 제공된다.
- 예배문 변경에 관한 총회의 지침은 『1994 총회록(Acts of Synod 1994)』 493-494 쪽과 『기독교개혁교회 운영 매뉴얼(Manual of Christian Reformed Church Govern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배와 음악의 원리, 요소, 그리고 지침에 관한 자료는 교단의 최신판 찬송가(현재 1987년판) 11-13쪽에 수록된 “시편송, 성경송, 찬송가에 대한 서문(Introduction to the Psalms, Bible Songs, and Hymns)”과 『1997 총회록(Acts of Synod 1997)』 664-668쪽, 그리고 교단 웹사이트([www.crcna.org](http://www.crcna.org))의 “Synod Resources(총회 자료)” 페이지에 게시된 1997년 예배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 53조

- a. 예배는 말씀사역자와 당회가 지명한 자들이 인도한다.
- b. 예배는 설교 인허를 받은 자나, 설교 낭독을 위해 당회가 지명한 자가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에서 당회가 승인한 설교 외의 다른 모든 공식 목회사역은 삼가야 한다.

-보칙 제53조 참조

##### 보칙 제 53조

##### 공식 목회사역

1. 말씀의 선포, 성례 집행, 성도를 향한 축도, 새 임직자 안수, 교인의 전입과 전출 등 특정한 목회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사역의 일부로서 교회에 맡겨진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한 특정 직분이 아닌 안수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위임

된 사역이다.

2. 그러므로, 역사가 깊은 조직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나 위탁목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 유만으로 이러한 예배의 유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3. 이러한 목회 사역은 주님과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며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이 사역은 양 떼를 강건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사역의 집례는 계속해서 교회의 규율 아래 있어야 한다.

(2001 총회록, p. 504)

#### 제54조

말씀 선포는 교회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신조와 신앙고백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 제55조

성례는 공식 예배에서, 당회의 권한에 따라, 규정된 예식문 또는 총회 지침에 부합하도록 수정된 예식문을 사용하여, 말씀사역자나 위탁목사가 집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을 받은 안수받은 직분자가 집례할 수 있다.

-보칙 제55조 참조

#### 보칙 제55조

- a. 안수받은 직분자가 성례를 집례하려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통상적으로 그 안수받은 직분자는 장로여야 한다.

(2002 총회록, p. 537)

#### 제56조

성례를 통해 입교교인(confessing members)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을 받는다. 당회는 성례의식이 신속하게 요청되고 집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성례를 받은 자녀는 “성례교인(baptized member)”으로 인정된다.

#### 제57조

성례받지 않은 성인은 공적 신앙고백을 한 후 성례를 받는다. 이러한 공적 신앙고백에

는 성인 세례 양식을 사용한다.

#### 제58조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이적해 온 성도의 세례는, 그 교단에서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례한 것이라면 유효한 세례로 인정한다.

#### 제59조

- a.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세례교인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회의 감독 하에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성만찬 참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 .
- b. 세례교인은 공예배에서 규정된 예식문을 사용해 공적 신앙고백을 하도록 권면한다. 이 공적 신앙고백에는 CRC의 신조와 신앙고백에 대한 서약이 포함된다. 공적 신앙고백에 앞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 교리에 관해 장로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증언해야 한다. 또한 공적 신앙고백을 할 이들의 이름은, 고백이 이루어지기 최소 한 주 전에 교회에 공표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공적 신앙고백을 한 성도는 “입교교인”으로 인정된다.
- c. 입교교인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권리에는 자녀로 세례 받게 함, 교인총회에서의 투표권, 직분 피택 자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책임에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광범위한 공동체에서의 봉사와 삶 그리고 상호권면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칙 제59조 c항 참조

- d. 다른 CRC 교회에서 이적해 온 입교교인은, 그들의 교리와 삶이 건전함을 증명하는 교적부를 제출하면 해당 교회의 입교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 e. CRC와 교제 관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적해 온 입교교인은, 이전 교회의 교적부나 확인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그 교리와 행실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입교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 f. 다른 교단에서 이적해 온 성도는, 당회가 그들의 교리와 행실을 조사한 후에만 입교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당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들을 직접 받아들일지, 혹은 공적 신앙고백이나 재신앙고백을 통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그들의 이름은 회중에 공표하여 승인을 받는다.

## 보칙 제59조 c항

각 교회는 입교교인으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나이를 결정한다.

(2011 총회록, p. 829)

## 제60조

성찬식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제61조

예배의 공중기도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중보기도를 포함해야 한다.

## 제62조

예배 중에는 정기적으로 헌금과 기타 다양한 형태의 봉헌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회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사역과 그 유지·발전을 돕고, 교단이 세계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사역과 교회가 지원하는 기타 사역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B. 신앙 양육

## 제63조

- 각 교회는 교회의 자녀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주로 신뢰하는 개인적 신앙을 갖도록 양육하고, 성만찬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공적 신앙고백을 준비시키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구비시킨다. 이러한 양육 사역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격려하고 붙들여 주는 일이 포함된다.
- 각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경과 신조, 신앙고백,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 이 교육은 당회의 감독 하에 시행된다.

## 제64조

- 각 교회는 성인 성도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며, 성도의 교제 안에서 격려와 돌봄을 받아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돕고, 교회와 세상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목양 사역을 한다.
- 각 교회는 성인 성도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당회의 감독 하에 시행된다.

## C. 목양

## 제65조

직분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목양적 돌봄을 베풀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역을 확장해야 한다. 가정 심방을 비롯해 영적 멘토링, 개인적인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교리나 삶에서 잘못된 이들을 회복시키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다.

## 제 66조

- 입교교인이 CRC 소속의 다른 교회나 본 교단과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로 이적할 경우, 교리와 삶에 관한 증명서를 카운실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해당 증명서가 요청되면, 일반적으로 새 거주지의 교회로 발송한다.
- 세례교인이 CRC 소속의 다른 교회나 본 교단과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로 이적하면,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세례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새 거주지의 교회로 발송된다.
- 교회의 증명서에는 카운실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 제67조

CRC 소속 교회나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교인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자신의 교적을 이전 거주지의 교회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명서를 새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CRC 교회로 보내도록 할 수 있다.

-보칙 제67조 참조

## 보칙 제 67조

### 소멸된 교적에 관한 규칙

a. 총회는 세례교인이나 입교교인이 교회의 지역을 떠나 더 이상 교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인이 요청하고 당회가 동의하면 그의 교적을 원 소속 교회에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교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고 주변 교회로의 이적도 하지 않을 경우, 당회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후, 출교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 교적의 소멸을 결정할 수 있다. 당회는 가능한 경우 해당 교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교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이 규정은 1881년도 및 1910년도 규정을 대체한다.

(1974 총회록, pp. 81-82)

### 출석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교인의 교적 소멸에 관한 규칙

세례교인이나 입교교인이 최소 2년 동안 이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적을 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지 않는 경우, 당회는 그의 교적의 소멸을 선언할 수 있다고 총회는 결정했다. 이러한 선언은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교인 본인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b. 교인 본인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한다.

c. 당회는 그 교인에게서 권징을 요하는 공적인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당회는 해당 교인의 교적 소멸에 관해 교회에 적절하게 공표해야 하며, 해당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한다.

(1976 총회록, p. 25)

## 제68조

각 교회는 교인의 출생, 사망, 세례, 공중 신앙고백, 교인의 전입과 전출, 출교와 기타 교적의 상실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한다.

## 제69조

a. 당회는 그 영적인 목회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b.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공적 예식서에 규정된 대로 합당한 권면과 서약, 기도와 함께 거행되어야 한다. 결혼식은 예배 중에 거행할 수도 있고,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사적 모임에서 거행할 수도 있다.

c.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을 주례해서는 안 된다.

-보칙 제6조 c항 참조

## 보칙 제69조 c항

2016년 총회가 교회들에 권고한 목회적 지침은 동성결혼 관련 목회 지침 연구위원회의 소수의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 총회 안전집, pp. 436-43). 이 보고서는 총회가 어떤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2016 총회록, p. 918 참조)

## 제70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행되는 장례식과 추모예배는 우리의 신앙적 확신을 드러내야 하며, 그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들은 유가족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전하며, 신앙의 가르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 제71조

카운실은 교인들이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미치는 비전을 분명히 가르치는 좋은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권면해야 한다. 또한 카운실은 부모들이 언약의 요구에 따라 자녀들이 이러한 비전에 걸맞는 교육을 받게 힘쓰도록 권면해야 한다.

## 제72조

카운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고, 교제하며, 양육하고, 섬김을 가르치는 모임을 권장하고 감독해야 한다.

## D. 교회사역

### 제73조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할 소명을 받았다.

### 제74조

- a. 교회는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치유와 화해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으로의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 b. 카운실은 교회의 고유한 전도와 구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훈련을 제공하며, 이를 이끌어 갈 리더십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각 교회는 이웃한 교회들과 연합하여 사역하고, 지역사회의 적합한 자원을 활용하며, 노회와 교단의 자원과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 c. 카운실은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 헌금을 통해 교단과 노회의 사역을 지원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 d. 각 교회는 집사와 장로가 각각의 직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사역 구성과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한다.

### 제75조

- a. 노회는 해당 지역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언하는 전도 및 구제 사역을 증진시키는 사역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
- b. 각 노회는 집사와 장로가 각각의 직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노회의 사역 구조와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한다.

### 제76조

- a. 총회는 교회와 노회가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총회는 교회와 노회가 지역적·국내적·양 국가적·세계적 차원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교단 사역들을 지정한다.
- b. 총회는 집사와 장로가 각각의 직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총회의 사역 구조와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한다.

### 제77조

총회는 CRC 운영핸드북과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교단의 사역들을 운영한다.

## IV. 교회의 훈계와 권징

### A. 일반규정

### 제78조

교회의 훈계와 권징의 목적은 잘못을 범한 이들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과 회중과의 온전한 교제로 회복시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다.

### 제79조

- a.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리와 삶에 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책임이 있다.
- b. 당회는 상호 책임의 정신을 복돋워 성도들이 편파·분열·이기심을 버리고, 환대·용서·연합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하며,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7-29절이 명하는 바와 같이 성만찬 참여와 관련하여 그러해야 한다.
- c. 당회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가르치고 일깨우며, 사랑과 열린 마음의 분위기를 교회 안에 조성하여, 잘못된 성도가 회개와 화해로 이끌려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0조

당회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와 마태복음 18장 15-17절 원리에 따라 회중에게 제기된 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 B. 교인에 대한 훈계와 권징

### 제81조

- a. 교인이 교리나 삶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당회의 신실한 권징을 받아야 하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그리스도 교회의 교적에서 제명된다.
- b. 세례교인이 죄로 인해 교적에서 제명되었다가 이후 회개할 경우, 공중 신앙고백을 통해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진다.
- c. 입교교인이 교적에서 제명되었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경우,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진다.
- d. 당회는 교인의 출교와 재입교에 대해 회중에게 알리고, 그 과정에 회중이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보칙 제78-81조 참조

### 보칙 제78-81조

- a. 당회는 진상을 충분히 조사하고, 해당 성도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권징을 시행한다.
- b. 당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교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입교교인에게 주어진 권리에는 자녀 세례, 교인총회 투표권, 직분 피택 자격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c. 성도를 교적에서 제명하는 일은 당회가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시행될 수 있다.
- d. 노회가 이러한 승인을 할 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판단
  - 2) 해당 성도에게 충분한 목회적 돌봄이 제공되었는지 확인
  - 3) 당회가 징계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 e. 회개와 교회 교제로의 온전한 회복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노회의 승인은 당회가 반드시 교적 제명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 f. 당회가 훈계와 권징을 위한 예식서와 공고문이 권징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회중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991 총회록, p. 718)

(2011 총회록, pp. 829-30)

## C.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권징

### 제82조

모든 직분자는 일반 징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직분의 정직과 파면이 포함되는 특별 징계의 대상도 된다.

### 제83조

직분자가 직분자 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 또는 남용하거나,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삶에서 심각하게 이탈하는 경우 특별 징계를 적용한다.

-보칙 제83조 참조

### 제84조

정직이나 파면된 직분자가 회개를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보이고, 교회가 그가 효과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를 직분에 복귀시킬 수 있다. 성적 학대나 성적 비행으로 파면된 자가 직분 회복을 요청할 경우, 총회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보칙 제78-84조 참조

-보칙 제82-84조 참조

-보칙 제84조 참조

### 보칙 제78-84조

#### 비밀유지 지침

총회는 훈계 및 권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카운실과 당회가 엄격한 비밀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지침을 교회들에 권고한다.

- a. 각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훈계와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인의 신앙적 의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b. 직분자들은 그들이 권면하고 징계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c. 징계 사안이 당회의 조치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거나 회중에게 공지해야 하는 경우, 신중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d. 징계가 공적으로 발표될 때 언어의 선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성도의

죄 자체는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해야 한다.

- e. 장로들은 징계 절차와 공적 발표에 관한 교회의 기존 규정들을 일관성 있게 준수해야 한다.

(1991 총회록, pp. 723, 769)

## 보칙 제82-84조

### 직분자에 대한 훈계와 권징

- a. 카운실은 건전한 교리나 경건한 삶에서의 일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불이익 없이 직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사례비와 복지 혜택은 계속 지급되며, 휴직 중 수행해야 할 직무가 있을 경우 카운실이 이를 명시한다. 모든 정직과 직무 휴직은 일시적 조치이다.

- b. 성적 비행을 자백하거나 그 죄가 입증된 직분자는 경건한 삶에서 심각한 일탈로 간주되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 c. 직분자에게 일반 징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 정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 d. 적법한 의결기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직 절차 없이 즉시 면직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e. 장로·집사·위탁목사의 정직/파면

- 1) 장로, 집사 또는 위탁목사의 정직 또는 파면은, 카운실이 동일 노회 내 가장 인접한 교회의 카운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 2) 인근 교회 카운실이 해당 장로, 집사 또는 위탁목사에 대한 해당 교회 카운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운실은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이 사안을 노회에 회부해야 한다.

- 3) 위탁목사의 파면은 해당 위탁목사의 안수를 승인한 노회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 f. 말씀사역자의 정직/파면

- 1) 말씀사역자의 정직은, 해당 목사가 소속된 교회 카운실이 동일 노회 내 가장 인접한 교회 카운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 2) 인근 교회 카운실이 해당 목사의 징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회 카운실은 결정을 변경하거나 이 사안을 노회에 회부해야 한다.

- 3) 목사의 파면은, 노회의 승인과 총회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 g. 두 개의 카운실에 소속된 목사

- 1) 청빙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교적을 둔 말씀사역자는 두 교회 카운실 모두의 훈계와 권징 대상이 된다. 어느 한 교회 카운실이 징계를 시작할 수 있으나, 상호 협의 없이 단독으로 조치할 수 없다.

- 2) 두 교회 카운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청빙교회가 속한 노회에 회부한다

- h. 정직의 해제: 정직을 부과한 의결기구의 고유 권한이다.

- i. 징계를 받은 말씀사역자가 복직을 요청할 경우, 해당 목사를 파면시킨 교회 카운실에서 이를 심의한다. 카운실이 신청자가 회개의 충분한 증거를 보이며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면을 승인한 노회에 총회 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승인을 요청한다.

- j. 복직 절차 진행이 승인되면, 노회는 이를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청자가 최초 안수 이후 총회가 추가로 부과한 모든 요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하며, 이때 보칙 제14조 e항의 규정을 지침으로 삼는다. 전 말씀사역자는 해직을 결정한 노회와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가 청빙 자격을 승인하기 전에는 청빙 대상이 될 수 없다. 청빙을 수락할 경우, 파면되었던 전 말씀사역자는 다시 안수를 받는다.

- k. 목사가 징계를 받는 중이거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사임할 경우, 제14조 c항에 따라 목사직에서 해직된다. 이때 제14조 b항 보칙의 규정은 제14조 c항에도 적용되며, 특히 이러한 상황에 적용된다.

-보칙 제14조 c항 참조

(1991 총회록, pp. 719-20)

(2016 총회록, pp. 863-64)

(2019 총회에서 개정, p. 783)

(2025 총회에서 개정, p. 688)

주: 카운실과 노회는 1998년 총회에서 채택된 목사의 정직 및 파면에 관한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1998 총회록, pp. 396-99).

## 보칙 제83조

직분 남용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권위의 불균형과 남용이다. 직분자에게 부여된 권위는 거룩한 위임이며,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 보칙 제84조

##### 성적 비행을 저지른 직분자의 재임직에 관한 규정

성적 비행을 고백했거나 그 죄가 입증되어 정직과 파면에 이른 이전 직분자가 재임직을 요청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임직을 허락하지 않는다.

- a.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행을 고백했거나 그 죄가 입증된 경우
- b. 동일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둘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적 비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했거나 그 죄가 입증된 경우
- c. 둘 이상의 공동체나 교회에서 성적 비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했거나 그 죄가 입증된 경우
- d. 성적 비행과 그와 관련된 다른 불건전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고백했거나 그 죄가 입증된 경우

관련된 불건전한 행위의 예로 포르노에 참여, 금전이나 기타 혜택을 대가로 한 성적 접촉, 관음 행위, 성적으로 외설적인 물건의 전시, 외설적 제스처나 발언과 기타 성적으로 위협적인 행위가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2. 카운실과 노회는 1. a-d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비행이나 다른 불건전한 행동으로 정직되거나 파면된 전 직분자에 대해, 교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 자문과 직분자의 재범 가능성에 관해 기독교인인 면허 소지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재임직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 1: 2010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총회에서 개정된 「교회 지도자의 학대 고소 처리 가이드라인」(2022 총회록, pp. 746-747, 853 참조)은 성적 비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 또는 감정적인 친밀함을 만들 목적으로, 동의 여부나 상황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성적인 만족이나 힘의 과시를 누리는 행위.
- 성적 접촉, 성적 행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을 목적으로, (동의 여부나 상황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나 성인을 착취하거나 심리적 길들이기(grooming)를 행하여, 성적 만족을 얻거나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 동료나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원치않는 접촉, 성적 행위 또는 감정적 친밀함.

- 또는 교회 사역이나 프로그램에서 함께 사역하는 감독자와 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원치않는 성적 접촉, 성적 행위 또는 감정적 친밀함.

주 2: 특정한 상황에서 파면된 직분자의 재임직을 금지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제14조에 따라 해임된 목사들과,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제명” 또는 “파면된 상태”로 공표된 목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4 총회록, pp 611-12)

(2016 총회록, pp. 865-66)

## 결론

#### 제85조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어느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 제86조

공동의 동의로 채택된 본 교회헌법은 충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그 개정은 총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판권, p. 2)

〈주요 용어 한영 대조표〉

| I. 공식 문서 (Official Documents)              |                                    |                                                                                                                           |
|--------------------------------------------|------------------------------------|---------------------------------------------------------------------------------------------------------------------------|
| Church Order                               | 교회헌법                               |                                                                                                                           |
|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 교회헌법과 보칙                           |                                                                                                                           |
| Acts of Synod                              | 총회록                                |                                                                                                                           |
| Agenda for Synod                           | 총회 안전집                             |                                                                                                                           |
| 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 총회 진행 규칙                           |                                                                                                                           |
| Covenant for Officebearers                 | 직분자 서약                             |                                                                                                                           |
| II. 회의 관련 용어 (Meetings & Procedural Terms) |                                    |                                                                                                                           |
| Assemblies                                 | 의결기구                               |                                                                                                                           |
| Agenda                                     | 안전                                 |                                                                                                                           |
| Communications                             | 의견서                                |                                                                                                                           |
| Overture                                   | 제안서                                |                                                                                                                           |
| Recommendations                            | 권고안                                |                                                                                                                           |
| Delegate                                   | (총회의 경우) 총대,<br>(대의원회나 노회의 경우) 대의원 |                                                                                                                           |
| Executive Session                          | 내부 회의                              |                                                                                                                           |
| Strict executive session                   | 비공개 내부 회의                          |                                                                                                                           |
| III. 재판 및 상소 관련 용어 (Judicial & Appeals)    |                                    |                                                                                                                           |
| Appeal                                     | 상소                                 | 하급 의결기구(카운실 또는 노회)의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직속 상급 의결기구(노회 또는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공식적인 절차. 세속법상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  |
|-------------|--------------------------------|--|
| Appellant   | 상소인                            |  |
| Complainant | 고소인                            |  |
| Respondent  | (고소의 경우) 피소인,<br>(상소의 경우) 피상소인 |  |
| Claimant    | 신고자                            |  |
| Accused     | 피신고자                           |  |
| Hearing     | 청문회, 심리                        |  |

| IV. 노회 관련 용어 (Classis)              |                   |                      |
|-------------------------------------|-------------------|----------------------|
| Classis (Classes)                   | 노회 (노회들)          |                      |
| Classis Contracta                   | 임시 노회             |                      |
| Stated Clerk                        | 노회 행정총무           | 노회 차원의 행정사무<br>총괄 담당 |
| Synodical Deputy                    | 총회 대리인            |                      |
| Regional Pastor                     | 지역 자문목사           |                      |
| Counselor                           | 노회 카운슬러           |                      |
| Church Visitors                     | 교회 방문단            |                      |
| Classis Ministerial Leadership Team | 노회 영입위원회          |                      |
| Classis Interim Committee           | 노회 운영위원회          |                      |
| License to Exhort                   | 설교인허              |                      |
| Emerging Church                     | 미조직교회             |                      |
| Organized Church                    | 조직교회              |                      |
| Gravamina                           | 신앙고백에 대한<br>이의 제기 |                      |

| V. 목회자 및 직분 (Ministers & Church Offices) |           |  |
|------------------------------------------|-----------|--|
| Ministers of the Word                    | 말씀사역자     |  |
| Commissioned Pastor                      | 위탁목사      |  |
| Loaned Pastor                            | 파견목사      |  |
| Interim Pastor                           | 임시목사      |  |
| Bivocational Pastor                      | 겸직 목사     |  |
| Emeritus/Retired Minister                | 은퇴목사      |  |
| Specialized Transitional Minister        | 전환기 전문 목사 |  |

|                   |      |                         |
|-------------------|------|-------------------------|
| Baptized Member   | 세례교인 |                         |
| Confessing Member | 입교교인 | 세례교인으로서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한 교인 |
| Officebearer      | 직분자  |                         |

#### VI. 교단 기관 (Denominational Agencies)

|                             |         |  |
|-----------------------------|---------|--|
| Office of General Secretary | 사무총장실   |  |
| Calvin University           | 칼빈대학교   |  |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 칼빈신학교   |  |
| ReFrame Ministries          | 미디어 선교부 |  |
| Resonate Global Mission     | 글로벌 선교부 |  |
| Thrive                      | 교회사역부   |  |
| World Renew                 | 국제 구제부  |  |

#### VII. 교단 주요 직책 (Denominational Positions)

|                                        |                 |  |
|----------------------------------------|-----------------|--|
| General Secretary                      | 교단 사무총장         |  |
| Director of Ecclesiastical Governance  | 총회지도국장          |  |
| Director of Partnership Administration | 교단 행정총무         |  |
| Director of U.S. Ministry operations   | 미국 사역 운영 디렉터    |  |
| Director of Candidacy Committee        |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디렉터 |  |
| Executive Director - Canada            | 캐나다 총괄 디렉터      |  |

본 책자는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제작한 것으로, 2026년 총회에서 채택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회 진행 규칙은 CRC 웹사이트 [www.crcna.org/SynodResources](http://www.crcna.org/SynodResources) 에서 볼 수 있다.

© 2025,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300 East Beltline Avenue NE

Grand Rapids, MI 49506-1208

미국에서 인쇄